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유형과 추이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검토를 중심으로 -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민 문 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유형과 추이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검토를 중심으로 -

The types and transitions of rebellion cases
in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study of the 《Ch'uan kŭp Kugan》

202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민 문 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유형과 추이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검토를 중심으로 -

The types and transitions of rebellion cases
in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study of the 《Ch'uan kŭp Kuga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민 문 기

민문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유형과 추이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검토를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민 문 기

《추안급국안》은 조선후기 약 300여 년간 발생한 역모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추적하고 처벌하였던 ‘추국’에서 발생한 기록이다. 현재까지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 경향에서는 《추안급국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그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추안급국안》에 담긴 사법절차나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개별적 사건이나 시기에 대한 연구에 그쳤다. 특히 개별 사건들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추안급국안》에 담긴 269건의 사건 가운데 약 20건만이 다루어졌을 따름이다. 그렇기에 《추안급국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안급국안》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조선후기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추안급국안》에 담긴 기록을 해석하고 ‘추국’과 추국에서 다루어진 각종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정치사를 재조명하고, 지금까지의 정치사에 대한 시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추안급국안》의 포괄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법적 규정과 적용되는 양상을 통하여 《추안급국안》에서 다룬 사건들의 종류가 무척 다양함에도, 공통적으로는 《대명률》에서 정의한 ‘십악’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추안급국안》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이 그동안 역모로 여겨졌던, 왕조에 대한 반란이나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 이외에도 꾀서·흉소·왕릉훼손·사학·강상범죄 등으로 무척 다양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즉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왕조국가 조선이, 국가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중히 다룬 사건이 몹시 다양했다는 것이다.

《추안급국안》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이 당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역모 내지는 그에 준하는 범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처형의 시기이다.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시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십악’에 해당되는 범죄만큼은 예외였다. 이 경우 부대시, 즉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추안급국안》에 담긴 사건은 총 269건이다.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백여 년간, 13명의 국왕 재임기에 일어나 추국청에서 심리한 사건들이다. 국왕 각각의 재임기간이 달라 사건의 수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 평균 사건 수로 계산하면 영조, 인조, 숙종, 순조 순으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 평균 사건 수가 많은 시기는 대체로 정치적·사회적 격변기이거나 개혁 군주의 통치기, 또는 조정을 위협하는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던 때이다. 예컨대 거듭되는 환국(換局)으로 정국이 급변하던 숙종 재위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조 재위기, 탕평책을 펼쳐 정치 개혁을 꿈꾸었던 영조 재위기 등이 그것이다. 즉, 왕조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다른 때보다 높아졌던 시기에 역모 사건이 다른 시기보다 많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추안급국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약 4,200여 명으로, 사건 당 평균 약

15.9명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사건의 양상에 따라 적게는 단 한 명만이, 많게는 수백여 명이 연루되어 심리가 진행되어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책 또한 무척 다양하여 기록된 것만 헤아려도 수백 여개에 달함이 확인된다. 즉 역모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왕 일가나 우의정·좌의정 등 의정부의 삼정승을 비롯하여 관료·내관·일반 백성·승려·노비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추국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심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가 바로 《추안급국안》의 전체적인 검토와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각종 사건들이 역모 내지는 역모에 준하는 사건에 속하여 취급되었고, 당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추국을 통해 처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왕에 의해서만 개좌가 가능한 추국은 당시 행정력이 집중되었던 것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러한 추국을 행할 정도의 사건들에는 기존의 통념과 같이 역적 모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흥흥한 말을 일삼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왕릉을 훼손하거나, 왕실의 물건을 훔치거나, 천주교 신앙을 가지거나, 아버지나 주인을 죽이는 등의 강상범죄까지도 추국을 열어 심리를 진행할만한 사건에 해당된 것이다.

단지 조정에 대한 반란행위 뿐만 아니라 사건들의 유형이 몹시 다양하였다는 점과 연루된 이들의 신분·직책도 무척 다양하였음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심리 과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당대의 국왕을 비롯한 조정이 지닌 각종 역모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었으며, 시대마다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 또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각각의 시대나 269건의 사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전말을 살펴볼 수는 없었기에, 이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요어] 역모(逆謀), 역모사건, 추국(推鞠), 추국청(推鞠廳),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목 차

제 1 장 머 리 말	1
제 2 장 추국의 의미와 추국청의 운영	6
제 3 장 조선후기 역모 사건과 《추안급국안》 검토	11
제 1 절 역모의 정의와 유형	11
제 2 절 역모 사건의 추이와 양상	24
제 4 장 맺 음 말	38
참 고 문 헌	42
부 록	46
ABSTRACT	55

표 목 차

[표 2-1]	추국의 종류별 차이	8
[표 3-1]	십악의 죄명과 범죄의 내용	12
[표 3-2]	《대명률》 ‘십악’을 기준으로 분류한 《추안급국안》 사건의 수와 종류...	16
[표 3-3]	《추안급국안》 사건의 유형별 분류	18
[표 3-4]	《추안급국안》 사건의 연대별 · 왕별 분류	24
[표 3-5]	《추안급국안》 사건의 왕별 재위기간 대비 사건수	26
[표 3-6]	《추안급국안》 사건 종류의 국왕별 분류	27
[표 3-7]	《추안급국안》 사건 종류의 50년 단위 분류	29
[표 3-8]	《추안급국안》 사건 유형별 처분 결과 및 적용 규정	30
[표 3-9]	《추안급국안》 사건의 연루 인원 수별 사건 종류	35
[표 3-10]	《추안급국안》 사건 수별 총 인원	36
[부표 1]	《추안급국안》 사건 목록 및 유형 분류	46

그림 목 차

[그림 4-1]	《추안급국안》 사건의 유형별 분류	18
[그림 4-2]	《추안급국안》 사건의 연대별·왕별 분류	25
[그림 4-3]	《추안급국안》 사건의 왕별 재위기간 대비 사건수	26

제 1 장 머 리 말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왕조국가였다. 조선의 왕은 조선왕조에 서 최대의 권력자이자 통치권의 소유자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왕의 권위나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은 조선왕조 자체에 대한 위협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모한 자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추적하고 일의 전모를 파악하여 결과에 따라 처벌하였다. 이러한 왕권에 대하여 도전하고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역모이다.

역모(逆謀)는 반역을 꾀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¹⁾ 그런데 임금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 하거나, 체제의 변혁 또는 전복을 위하여 다수의 인원이 모여 집단행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역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왕이 중심이 된 조선사회를 변혁하거나 전복시키려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모의하는 행위, 왕가의 종묘·산릉·궁전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 왕조에 관하여 흉악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행위, 왕실과 관련된 물품을 절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강상(綱常)을 거역하는 등의 행위를 통틀어 역모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중대하게 취급되었다.

역모로 여겨지는 일이 발생하면 왕명에 따라 임시관청인 추국청이 개설되어 역모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 엄격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역모에 해당된다면 중앙의 추국장으로 옮겨졌다. 이때 죄인을 압송하고 추국을 시작하는 것부터, 죄인을 신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1) ‘역모(逆謀)’란 ‘반역을 꾀함. 또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단어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05.20.). 현재까지 한국사연구에 있어서 ‘역모’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거나 서술하는 경우는 없었고 대체로 그대로 이용하였다. 고수연의 경우 역모를 ‘정계 복귀 내지는 정권 탈취를 위하여 반란을 모의하고, 패서를 게시하고, 시험장에서 흉서를 적어 내는 등’의 행위로 서술하였고(고수연, 「『推案及鞫案』에 기록된 戊申餘黨 謀反事件의 樣相」, 『역사와 담론』 92, 2019, 205쪽.), 심재우는 영조대 발생한 나주(羅州) 패서사건(掛書事件)과 심정연(沈鼎衍) 시권사건(試券事件), 경종대 신임옥사(辛壬獄事), 영조 즉위 직후의 무신란(戊申亂) 등을 모두 ‘역모 사건’이라 서술하였다.(심재우, 「영조대 정치법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정신문화연구』 33, 2010, 43쪽.). 김우철의 경우 ‘역모’를 일반적 용어로 규정하여 서술하였다.(김우철, 「仁祖 24년(1646) 安益信 謀反 사건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33, 2008, 249쪽.)

처결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추국청의 문서가 《추안급국안》이다.

《추안급국안》은 조선후기 약 300여 년간 이루어진 추국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을 모아 편철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은 당시 추국청까지 설치하며 조사되었다. 이는 곧 해당 사건들이 당대에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따라서 이러한 추국의 기록인 《추안급국안》은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안급국안》은 1975년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다.²⁾ 이후 1984년 영인본이 출간되었고³⁾, 2014년 국역본이 출간되었다.⁴⁾ 하지만 《추안급국안》은 장기간 연구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도 《추안급국안》의 종합적인 연구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즉 《추안급국안》이나 이에 관련한 통시적·종합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목할만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추안급국안》에 대하여 전체적 구성이나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정광호의 연구는 가장 처음 《추안급국안》이라는 사료의 존재를 알린 것으로, 방대함과 포괄성을 강조하였다.⁵⁾ 정석종은 《추안급국안》의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관찬(官撰)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이 상세히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추안급국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⁶⁾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시론적인 연구에 불과하며 《추안급국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기에 담긴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문경득은 《추안급국안》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연구를 통해 《추안급국안》의 특성을 살피는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⁷⁾

둘째로는 《추안급국안》에 담긴 추국의 절차와 제도적 측면을 다룬 연구가 있다. 김우철은 《추안급국안》에 나타난 ‘결안’에 중점을 두어, 결안의 형성 과

2) 정광호, 「(해제)추안급국안」, 『민족문화』1, 1975.

3) 한국학문헌연구소, 《추안급국안》 1~30, 아세아문화사, 1984.

4) 오항녕 외, 『추안급국안 국역본』 1~90, 흐름출판사, 2014.

5) 정광호, 위의 논문, 1975.

6) 정석종, 위의 책, 일조각, 1983; 정석종, 「추안급국안의 민중사적 가치」, 『한국학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 1983; 정석종, 「추안급국안해제」, 『추안급국안』 1, 1984.

7) 문경득,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DB 구축 및 창작소재 콘텐츠 개발 방안」, 『인문콘텐츠』 35, 2014.

정이나 작성 형식 및 내용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분석하였다.⁸⁾ 다만 ‘결안’의 형식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나 이를 둘러싼 갈등구조는 다루지 않았다. 김영석의 경우 소송에 관한 규정이 당시 사회의 이념 내지는 사상을 담고 있다고 간주하여, 추국을 담당한 의금부의 구성원, 사법권 행사의 절차 등을 실록과 《추안급국안》의 기사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금부 인적 구성의 변화, 사법절차의 제도적 변화를 추적하였다.⁹⁾ 이러한 절차적, 제도적 분석은 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해결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추안급국안》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적 사건들에 대한 연구나, 특정 시기에 관한 연구가 있다. 효종 2년(1651) 김자점의 난¹⁰⁾이나, 영조 4년(1728) 무신란¹¹⁾, 영조 6년(1730) 경술모반사건¹²⁾에 관한 연구 등으로, 주로 오늘날까지도 중대하다 여겨지는 사건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배는 《추안급국안》의 기록 가운데 괘서(掛書)의 사례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¹³⁾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지만, 《추안급국안》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김정자는 《추안급국안》을 통하여 특정 시기의 정국과 정치 세력의 동향을 살폈는데, 《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은 연대기 사료와 국왕이 직접 국문한 내용을 실은 《친국일기(親鞫日記)》, 그리고 당시 인물들의 문집 등을 함께 검토하여 《추안급국안》의 사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당대의 정국과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였다.¹⁴⁾ 한편 이하정은 영조·정조 시기 《추안

8) 김우철, 「조선후기 추국 운영 및 결안의 변화」, 『민족문화』35, 2010.

9) 김영석,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10) 김세봉, 「효종초 김자점 옥사에 대한 일연구」, 『사학지』34, 2001.

11) 변주승·문경득, 「18세기 전라도 지역 무신란의 준비과정-「무신역옥추안」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93, 2013; 변주승·문경득, 「18세기 전라도 지역 무신란의 전개과정」, 『인문과학연구』39, 2013; 문경득, 「조선 후기 심문 진술 기록의 사료비판 방법론 연구」, 『조선시대사학보』83, 2017; 문경득,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 연구」, 전주대 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7.

12) 조윤선, 「영조 6년(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42, 2007; 조윤선,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흠휼책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48, 2009.

13) 이상배, 『조선후기 정치와 괘서』, 국학자료원, 1999.

14) 김정자, 「순조 전반기 정국의 동향과 李審度 獄事의 전말 - 「親鞫日記」와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89, 2019; 김정자, 「헌종 후반~철종 초반 정국과 정치 세력의 동향 - 成齋 趙秉鉉 賜死 사건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96, 2021.

급국안》에 나타난 개별 사건의 추국 과정과 추국장의 모습을 통하여 당대 국가 권력의 특성과 더불어 국가권력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분석하였다.¹⁵⁾

이렇게 축적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안급국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나 전체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진한 상황이며,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안급국안》을 통해 드러나는 많은 역모 사건 가운데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무신란(戊申亂) 등의 양반 세력의 주도 하에 체제의 변혁·전복을 노린 것이라 여겨지는 사건이 대부분이다.¹⁶⁾ 하지만 《추안급국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모 사건의 주모자 신분은 양반부터 궁녀·무당·노비·승려·일반 양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사건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가 존재하므로 지금까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단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안급국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선 후기 정치·사회적 시대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신분 계층이 연루된 사건의 분석을 통하여 당시 민중들의 삶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안급국안》의 포괄적인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추안급국안》에 담긴 개별 역모 사건들의 시기와 종류, 주모자와 그들의 신분 등을 확인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추이를 파악하고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추안급국안》에 기록되어 있는 역모 사건들을 통하여 조선후기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통하여 다양한 정치·사회상을 살펴보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추안급국안》의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역모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역모 사건을 심리하였던 추국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추국청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추국과 추국청이란 무엇이며 조선 사회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였는지, 그리고 그 운영 양상은 어떠하였는지

15)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 영조 13년(1737년)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50, 2018.

16) 《추안급국안》을 통하여 연구의 대상이 된 개별사건은 무신란·나주괘서사건·김운질 반역 사건·회평군 이원경 모반 사건 등 약 20건으로, 이는 전체 사건 269건의 7.4%에 불과하다.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추안급국안》을 면밀히 살피기에 앞서, 대략적인 수록 범위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추안급국안》에 등장하는 역모 사건의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종합적 검토 및 이를 통한 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추이와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대에 이용되었던 법전인 《경국대전》, 《속대전》, 《대명률》 등에 나타나는 역모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 역모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추안급국안》에는 ‘《대명률》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으므로, 《대명률》의 규정, 그 중에서도 ‘십악(十惡)’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추안급국안》의 최초 보고·조율·결안 등의 기록을 통하여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추안급국안》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사건별 시기, 해당 시기의 국왕, 사건의 처벌 양상, 연루 인원 수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치화한 뒤 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추안급국안》에 드러나는 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조선후기 역모 사건이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가에 대응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안급국안》의 검토를 통하여 조선후기 역모로 취급된 사건들의 종류와 성격이 무척 다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역모 사건의 추이와 그 변화 양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추안급국안》의 검토를 통하여 당시 민들의 삶을 살펴보고 조선후기 정치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 2 장 추국의 의미와 추국청의 운영

조선시대 추국청은 역모와 같이 왕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는 임시 기구였다.¹⁷⁾ 추국청에서는 역모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범죄들도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임시 기구인 추국청을 열고 추국을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왕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왕명을 받아 추국을 운영하는 것은 《경국대전》에 나온 바와 같이 의금부의 몫이었다.¹⁸⁾ 여기서 추국의 의미에 대하여 《경국대전주해》에서는 ‘추(推)는 그 죄를 살피는 것이다. 국(鞫)은 죄인을 끝까지 다스리는 것인데, 말로 죄인을 국문하는 것이다.’¹⁹⁾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추국이라는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태조 때의 일이다.

산원(散員) 최안종(崔安宗)의 아내 중보(重寶)가 그 남편의 고종사촌동생 김종명(金仲明)과 간통하고 최안종을 목 졸라 죽였다. 일이 발각되어 형조에서 추국(推鞫)하니, 김종명은 도망쳤고, 아내 중보는 교형(絞刑)에 처하였다.²⁰⁾

그런데 《경국대전》과 《경국대전주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추국을 관장하는 것은 의금부임에도 위의 기사에서는 형조에서 추국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체가 의금부 또는 추국청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에도 다수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형조·예조·병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등도 주체가 되어 추국을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그러나 이는 왕명에 의해 행해지는 추국

17) 김우철, 앞의 논문, 209쪽.

18)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從一品衙門 “義禁府掌奉教推鞫之事”

19) 《經國大典註解》 後集 吏典 天官冢宰 義禁府條 推鞫 “推審其罪也鞫窮理罪人也以言鞫之也”

20) 《太祖實錄》 태조 4년(1395) 12월 3일 “散員崔安宗妻重寶奸其夫表弟金仲明縊殺安宗事覺刑曹推鞫仲明逃絞重寶”

21) 《世宗實錄》 세종 14년(1432) 2월 23일 임자 “崇善啓求其醫而未得請令兵曹推鞫從之” 《世宗實錄》 세종 26년(1444) 3월 14일 갑자 “上曰汝等之言是矣然汝等鞫獄何其易且急也大抵義禁府刑曹司憲府推鞫之際或妻子或僕隸爲家長而上言者多矣雖造飾誣妄亦不加罪於家長此我國之常法也”；《世祖實錄》 세조 9년(1463) 9월 11일 정묘 “王世子未寧戶曹參判任元濬承命議藥後不啓還第卽召元濬令承政院推鞫尋命赦之”；《成宗實錄》 성종 16년(1485) 11월 15일 임술

의 주관 기구가 다양하게 지정되었던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일정 시기까지는 피고인 등을 여러 관청에서 단독으로 또는 합동으로 피고인 등을 신문하는 절차를 뜻하는 보통명사로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²²⁾ 이러한 보통명사로서의 사용은 16세기 무렵부터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며, 17세기 이후 추국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의금부를 주체로 서술된다.²³⁾ 즉, 17세기 무렵부터 추국은 왕명에 의해 의금부를 주체로 행해지는 죄인 신문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여겨진다.²⁴⁾

반면 추국청의 경우 추국처럼 보통명사로서 혼용되지 아니하고 비교적 명칭하게 기록되어 있다. 추국청이라는 명칭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명종 3년(1548)의 일이다.²⁵⁾ 명종 즉위년(1545)에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난 이후 사관(史官) 안명세(安名世)를 둘러싼 논란과 처벌 논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추국청’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죄인에 대한 추국으로 기능하던 추국청이라는 명칭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을사사화가 일어난 명종 즉위년보다 더 이전임을 알 수 있다.²⁶⁾

정리하자면 17세기 무렵부터 추국은 왕명에 의해 의금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

“沈澮等僉啓曰野人官敎詐僞之由令禮曹推鞠傳曰可”; 《成宗實錄》 성종 20년(1489) 11월 1일 을묘 “分遣注書史官審察諸獄以司憲府罪人金水碩鎖械不如法命司諫院推鞠司憲府官吏”

22) 김영석,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법사학연구』 48, 2013, 40쪽.

23) 17세기 이후에도 추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관청은 내수사(內需司)가 유일하다. 내수사에는 내옥(內獄)이 설치되어 임금이 개인적으로 부리는 사람을 시켜 신문하는 사옥(私獄)으로 운영되었으나 숙종 37년(1711)에 이르러 혁파되었다. 내수사에서 추국을 행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 총 네 건이 기록되어 있다(김영석, 위의 논문, 43~44쪽.).

24) 김영석, 위의 논문, 44쪽.

25) 《明宗實錄》 명종 3년(1548) 2월 12일 “安名世供云 … 羅湜成子澤郭珣之招辭漏略而不書他罪人招辭亦多不書情由慶會南門推鞠罪人之際史官不在推鞠廳例退避于差備門前板牆後及其盡書招辭入啓之時承傳色下來後得見之 …”; “안명세(安名世)의 공사(供辭)는 다음과 같다. “…나 식(羅湜)·성자택(成子澤)·곽순(郭珣)의 초사를 생략하고 다 기록하지 않은 일과 다른 죄인의 초사도 많이 기록하지 않은 일의 사유로 말하자면, 경회루(慶會樓) 남문(南門)에서 죄인을 추국할 때 사관은 추국청(推鞠廳)에 있지 않고 으레 차비문(差備門) 앞 판장(板牆) 뒤에 퇴피(退避)해 있다가 그 초사들을 모두 써서 입계(入啓)할 때에 이르러 승전색(承傳色)이 내려온 다음에야 얻어 보게 되므로, …”

26) 안명세(安名世, 1518~1548)는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난 명종 즉위년(1545) 당시 사관으로서 해당 사화의 상세한 전말을 담은 시정기(時政記)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사화를 주도하였던 윤원형(尹元衡) 등의 세력이 많은 선비들을 처형한 사실 등을 그대로 담았다. 이에 윤원형 등은 이러한 서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역적의 범죄 진술은 생략되어 있고 역적이라 칭하지도 않았음을 문제 삼아 사관 안명세를 국문하게끔 한 것이다. 이 국문 과정에서 사관 안명세는 자신에 대한 혐의 가운데 역적의 범죄 진술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추국청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항변하였다.

어지는 여러 죄인에 대한 심문을 뜻하는 용어로서 자리잡았다. 그리고 추국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명종대의 일인데, 처음 등장한 이래 역모 사건과 관련된 추국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국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먼저 추국은 사건의 내용이나 긴급한 정도, 중요성 등에 따라 친국(親鞫), 정국(庭鞫), 본부추국(本府推鞫), 삼성추국(三省推鞫) 이렇게 네 가지로 대별하여 취급되었다.²⁷⁾ 친국은 왕이 죄인을 직접 국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궁성호위(宮城扈衛) 속에서 죄인을 궐내로 압송하여 실시하였다. 정국은 왕의 위임을 받은 대신이 궐 안에서 죄인을 대신 국문하는 것으로 절차는 친국과 대개 동일하였다. 본부추국은 왕의 위임을 받은 대신이 궐 밖, 주로 의금부에서 죄인을 국문하는 것이고, 삼성추국은 삼성(三省)이 합동으로 왕의 위임을 받아 강상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신 국문하는 것이다.²⁸⁾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추국의 종류별 차이

구분	국문 시행 주체	장소	궁성호위 여부	문사낭청 차출인원	비고
친국	왕	궁궐 안	O	8명	
정국	위임 대신	궁궐 안	X	6명	
본부추국	위임 대신	궁궐 밖 (의금부)	X	4명	
삼성추국	삼성 합동	궁궐 밖	X	2명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엄격하게 나뉘어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추국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기에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방식이

27) 《銀臺便攷》와 《銀臺條例》에는 친국·정국·추국·삼성추국으로 분류되어있으나 본고에서는 모두의 통칭인 추국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부추국으로 기재하였다. 조선후기 본부추국이라는 용어는 의금부에서 왕명에 의하여 행하는 추국임을 나타내는 것임이 《조선왕조실록》 다수의 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김영석, 앞의 논문, 44~50쪽.).

28) 정석중, 앞의 책, 8~9쪽.

변경되기도 하였다. 즉, 친국을 행하던 사건이 이후 정국·본부추국으로 바뀌기도 하였고, 정국·본부추국을 행하던 사건이 친국으로 바뀌기도 하는 등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만 강상 범죄를 다루었던 삼성추국은 이러한 변화에 해당하지 않았고 오로지 삼성추국으로만 행해졌다.

어떠한 방식의 추국을 행할 것인지는 사건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달라졌다. 의금부나 포도청의 보고, 상소나 고변 등을 통하여 역모 사건이 확인되면, 왕은 추국을 개시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리고 죄인은 어느 지역에 있건 추국을 위하여 중앙으로 압송되었다. 이후 추국의 종류와 더불어 이를 주관할 위관(委官)과 의금부 당상을 정하고, 실무자인 문사낭청을 차출했다. 이상은 추국을 열기 전 필요한 사전 작업의 일종이었다.

추국의 일반적인 절차는 조사 → 심문(審問) → 진술 → 형신(刑訊) → 재심(再審) → 논의 → 결안(結案) → 조율(照律) → 처결(처형·귀양·석방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²⁹⁾ 추국이 열리면 죄인을 조사하는데 심문을 하여 진술을 받고, 필요시 대질심문을 하여 진술을 확인하고, 이러한 진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매를 때리며 조사하는 형신(刑訊)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만족스러운 진술이나 자백을 얻어내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반복하여 시행했다.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추국청에 참여한 관료들과 논의하고 이후 왕에게 보고하여 결안을 받았다. 그 뒤 법전의 조목과 대조해보는 조율을 진행한 뒤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정하여 처결했다. 만약 결안-조율-처결의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죄인이 조사 도중 사망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추국이 끝난다면 남은 죄인은 유배를 보내거나 석방하였다.³⁰⁾

이처럼 왕은 역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관청인 추국청을 열고, 추국을 주관할 위관과 의금부 당상 등을 정하고 실무자인 문사낭청을 차출하였다. 또한 죄인이 어느 지역에 있건 조선의 수도로 압송하였으며, 사건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든 죄인에 대한 조사를 반복하게끔 하였다. 여기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만큼 추국을 통하여

29) 김우철, 앞의 논문, 207쪽.

30) 김우철, 위의 논문, 211쪽.

다루어지는 사건들이 당대 무척 중대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으로 하여금 상당한 행정력을 소모하게끔 하였던 중대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또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조선후기 약 300여년간 일어난 각종 역모 사건들에 대한 기록인 《추안급국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추안급국안》은 추국이 진행되는 동안 추국청에서 생산된 다양한 문서를 사건별로 엮어 책으로 만든 일종의 등록이다.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00여 년간 발생한 각종 사건에 대하여 진행한 추국과 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심문·진술이 총 331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추안급국안》의 수록 범위는 선조 34년(1601)의 길운절(吉雲節) 반란 사건을 시작으로 이괄의 난, 유효립 옥사, 정한 옥사, 김자점 역모사건 등의 반역사건과, 숙종 대 장희빈과 인현왕후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당쟁이 심했던 숙종 후반기의 궤서·무고 사건, 경종과 세제 영조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음모 사건 또는 이광좌의 난 등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후기에 이르러 발생하는 천주교도 학살 관련 기록, 조선후기 임오군란·갑신정변 등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년의 기록이 담겨있어 무척 넓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선후기 역모 사건과 《추안급국안》 검토

제 1 절 역모의 정의와 유형

역모는 왕조국가인 이상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다.³¹⁾ 따라서 국가마다 응당 역모의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국전(國典)으로서 편찬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조선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법전 편찬에 매진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 《속육전(續六典)》 등의 법전을 편찬하였고, 이후 각 제도를 집대성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역모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가 없다. 단지 형전 용률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한다.³²⁾

《대명률》은 명(明)나라에서 편찬한 법전이다. 《경국대전》 형전의 서술은 즉 명의 현행법인 《대명률》을 그대로 조선의 형법으로 쓴다는 것이었다.³³⁾ 따라서 조선의 역모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반법으로 기능하였던 《대명률》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명률》에서는 역모에 대해 십악(十惡)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십악(十惡)은 《대명률》의 가장 첫 권에 제시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의 집합체로,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의 열 가지 죄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십악의 죄명과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3-1>과 같다.

31) 조지만, 「조선후기 형사법으로서의 대명률과 국전」,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56쪽; 문경득, 앞의 논문, 175~177쪽.

32) 《경국대전》 刑典 用律 “用大明律”

33) 조지만, 「《경국대전》 刑典과 《大明律》」, 『법사학연구』34, 2006, 6쪽.

〈표 3-1〉 십악의 죄명과 범죄의 내용³⁴⁾

죄명	범죄의 내용
모반 (謀反)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꾀하는 것
모대역 (謀大逆)	종묘(宗廟)·산릉(山陵)·궁궐 등을 훼손하기 위하여 꾀하는 것
모반 (謀叛)	본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와 몰래 통하여 반란을 꾀하는 것
악역 (惡逆)	조부모·부모나 남편의 조부모·부모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기를 꾀하거나, 백숙부모·고모·형·누나·외조부모·남편 등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
부도 (不道)	한 집안 안의 사죄(死罪)가 아닌 세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지를 잘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생기를 채취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독충 따위를 기르거나, 염매에 가탁하여 저주하는 것이다.
대불경 (大不敬)	태묘 및 능묘에서 신에게 바치는 물건과 임금에게 올리는 수레, 가마, 입고 쓰는 물건 등을 훔치거나, 임금의 도장을 훔치거나 위조하거나, 임금에게 올리는 약을 착오로 본방에 따르지 않거나, 약봉지의 이름을 잘못 쓰거나,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착오로 식금을 범하거나, 임금이 몸소 타는 배를 착오로 견실하게 만들지 않는 것
불효 (不孝)	조부모나 부모나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를 고소하거나, 악담으로 욕하거나,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호(戶)를 나누어 따로 살며 재산을 나누어 가지거나, 봉양하지 않거나,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혼인하거나 혹은 잔치를 벌여 음악을 연주하거나 혹은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거나, 조부모나 부모의 부음을 듣고도 숨기고 거애하지 않거나, 생존해 있는 조부모나 부모를 돌아가신 것처럼 거짓으로 칭하는 것
불목 (不睦)	시마친인 동성 팔촌 이상 친속을 살해하려고 꾀하거나 팔아 버리거나, 자기의 남편 및 대공친인 동성 사촌 이상 손윗사람, 소공친인 동성 오촌이나 육촌 손윗사람 등을 때려 상해하거나 고소하는 것
불의 (不義)	관할 지역 내의 인민(人民)이 자신을 관할하는 관원을 살해하거나, 군사가 자신을 관할하는 병마사·부사·천호·백호 등을 살해하거나, 아전이나 군졸 등이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5품 이상 관원을 살해하거나, 혼도를 받은 스승을 살해하거나, 자신의 남편의 부음을 듣고도 숨기고 거애하지 않거나 잔치를 벌여 음악을 연주하거나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거나 다른 남자에게 개가하는 것
내란 (內亂)	소공 이상의 친속이나 아버지·할아버지의 첩 등과 간음을 범하거나, 화간하는 것

34) 《大明律直解》 第1卷 名例律 十惡條.

십악의 내용은 대개 왕조의 존립과 권위를 위협하는 범죄, 인명에 관한 범죄, 군신·부자·부부·근친간의 범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는 왕조의 존립과 권위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한편 유교 윤리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였다.³⁵⁾ 따라서 《대명률》에서는 십악을 극악한 범죄라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유교적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십악은 《대명률》을 일반법으로 받아들인 조선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기능하였다. 특히 십악의 모반·모대역 등은 왕의 권위나 정통성을 위협하거나, 왕조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중대하게 취급하였다. 또한 악역·불효·불의 등도 조선의 이념적 근간이었던 유교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강상죄라 하여 모반·모대역에 준하는 범죄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강상죄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속대전》이 편찬되면서 비로소 명문화되었다.

강상죄인(綱常罪人) 아버지·어머니·남편을 죽인 경우,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경우,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이다.³⁶⁾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시아버지·시어머니·남편·백부(伯父)·백모(伯母)·숙부·숙모·형·누나를 죽인 경우,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경우, 관노가 관장(官長)을 죽인 경우(이상은 실행에 옮긴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따지지 않는다.), 고용(雇工)이 가장(家長)을 죽이는 경우, 계모를 간음하거나, 백모·숙모·고모·누나·누이 동생·며느리를 간음하거나, 사내종이 여자 상전을 간음하는 경우, 적모(嫡母)를 방매(放賣)하거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거나 욕하는 경우, 아비의 시체를 불태우는 경우(이상은 실행에 옮긴 경우만 따진다.)에는 모두 삼성추국(三省推鞠)을 연다.³⁷⁾

즉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십악 개념을 수용하여, 이에 해

35) 박경, 「十惡 개념의 수용을 통해 본 조선 전기 사회윤리의 구축 과정」, 『사학연구』106, 2012, 67쪽.

36) 《續大典》 刑典 推斷 綱常罪人 “綱常罪人弑父母夫奴弑主官奴弑官長者”

37) 《續大典》 刑典 推斷 弑父母三省推鞠 “弑父母祖父母舅姑夫伯叔父母兄弟者奴弑主官奴弑官長以上勿論已行未行雇工弑家長者淫烝後母者淫姦伯叔母姑母姊妹子婦者奴姦女上典者放賣嫡母者毆辱父母者燒火父屍者以上已行竝三省推鞠”

당하는 열 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히 다스렸다. 특히 왕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모반·대역뿐만 아니라 유교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강상범죄까지도 몹시 중요한 죄로 인식하여 다른 죄에 비하여 무겁게 다루었다. 이러한 시각은 《대명률》에서 형 집행 시기에 대한 규정과 사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는 시기에 대하여 《대명률》형률(刑律) 사수복주대보조(死囚覆奏待報條)에서는,

만약 입춘(立春) 이후, 추분(秋分) 이전에 사형을 집행한 자는 장(杖) 80대에 처한다. 단 십악(十惡)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 할 자와, 강도범(強盜犯)은 그 죄가 비록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³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도 정해진 시기가 있어서 이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지만, 십악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형에 처해야 할 자는 시기를 막론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안급국안》에서는 이를 따라 대부분의 사형 집행의 경우 ‘대명률 사수복주대보(死囚覆奏待報) 조항에서는 십악의 죄를 저지른 자는 결코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不待時).’라 언급하며 즉시 형을 집행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대명률》에 나타난 사면에 관한 규정에서도 ‘십악’을 중대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례율(名例律) 상사소불원조(常赦所不原條)에 따르면,

무릇 십악의 죄, 살인을 범한 자와 관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와 강도, 절도, 방화한 자와, 남의 묘를 도굴한 자, … 등 모든 진범은 비록 사면령(赦免令)이 있더라도 모두 사면하지 아니한다.³⁹⁾

라고 사면에서 예외가 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중대한 범죄들 가운데에서도 ‘십악’은 가장 앞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십악’을 가장 중

38) 《大明律直解》 第28卷, 刑律, 死囚覆奏待報條.

39) 《大明律直解》 第1卷, 名例律, 常赦所不原條.

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면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모습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조 27년(1594) 1월 1일, 역적 송유진(宋儒眞)의 무리를 토벌한 직후 선조는 ‘하늘의 주벌이 매우 엄하여 대중의 분노가 통쾌하게 씻어졌으니, 탕척(蕩滌)하는 일을 거행하여 중외(中外)에서 듣고 용동케 하는 것이 마땅하’⁴⁰⁾다 말하며 사면령을 내렸는데, 이때에도 사면의 대상은 ‘모반(謀反), 대역(大逆),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한 죄, 처첩(妻妾)이 남편을 죽인 죄, 노비가 주인을 모살(謀殺)한 죄, 미리 꺾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 염매(魘魅) 고독(蠱毒)한 죄, 국가 강상에 관계된 죄, 장오(贓汚)를 범한 죄, 강도·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한하였다.⁴¹⁾ 즉 모반·대역죄부터 강상범죄까지 ‘십악’에 해당되는 범죄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당시에는 ‘십악’에 해당되는 범죄들, 즉 모반·대역죄부터 강상범죄까지 몹시 중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들이야말로 왕의 권위를 해하고 왕조를 위태롭게 하며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치적·사상적 근간을 해치는 극악무도한 ‘역모’로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모 사건에 대한 시각은 추국의 기록인 《추안급국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안급국안》에는 총 269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대명률》 ‘십악’을 기준으로 사건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3-2>과 같다.

40) 《宣祖修正實錄》 선조 27년(1594) 1월 1일 “天誅甚嚴輿憤快洩宜示滌蕩之舉俾聳中外之聽”

41) 《宣祖修正實錄》 선조 27년(1594) 1월 1일 “除謀反大逆子孫毆打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魘魅蠱毒係關國家綱常贓汚強竊盜外”

〈표 3-2〉 《대명률》 ‘십악’을 기준으로 분류한 《추안급국안》 사건의 수와 유형

십악 죄명	대응하는 사건 유형	개수(건)	비율(%)
모반(謀反)	역모·역모무고·괘서 등	222	82.5%
모대역(謀大逆)	어진훼손·왕릉훼손 등	13	4.8%
모반(謀叛)	사학	11	4.1%
부도(不道)	저주	6	2.2%
대불경(大不敬)	왕실물건절도	3	1.1%
악역(惡逆)	강상범죄	4	1.5%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			
해당 안 됨	가칭어사·왕족사칭·위조 등	10	3.7%

* 비율(%) = (사건 개수÷총 개수)×100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역모 내지는 역모에 준하는 사건들 대부분은 ‘십악’의 모반 또는 모대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는 총 235건으로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사건들 중 약 87%에 달하는 수치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사학 사건이 ‘십악’ 중에서 모반(謀叛), 즉 ‘본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와 몰래 통하여 반란을 꾀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것인데, 이는 당시 천주교 신앙 내지는 그 신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시각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저주 사건의 경우는 ‘십악’ 중에서 부도(不道)에, 왕실물건절도 사건은 대불경(大不敬)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십악’의 악역(惡逆)·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은 모두 내용상 강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라 처벌하였다.

다만 ‘십악’에 대입시키기 어려운 사건도 존재하였는데, 가칭어사·왕족사칭·위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추안급국안》에서는 이러한 사건 등도 ‘십악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서술하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처벌하(不待時)'도록 하고 있어 비록 '십악'에 속하지는 않을지언정 일반적인 역모사건과 그 처분은 흡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십악'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정리할 경우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들은 약 87%가 모반·모대역에 해당하므로 각 사건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각각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십악'에 근거한 분류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세밀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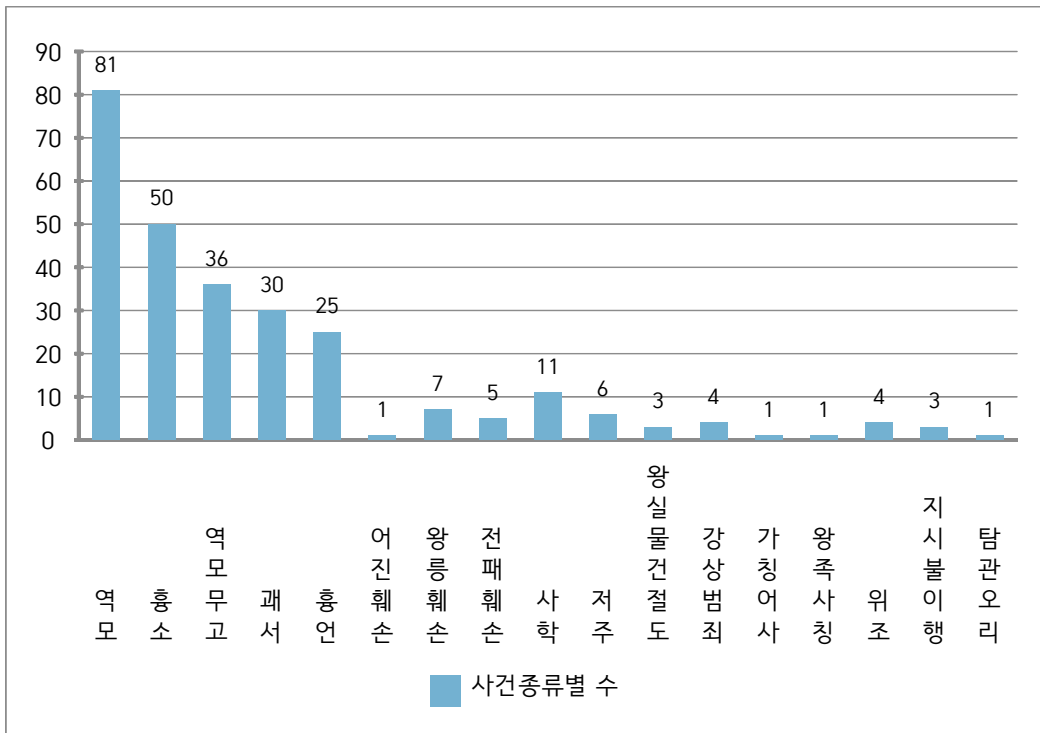
분류의 기준으로는 먼저 《추안급국안》의 심문 기록 가운데 왕이 최초로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의 장계(狀啓)·고변(告變) 등 최초 보고 문건을 확인하였다. 해당 보고에는 사건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기본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대부분 분류가 가능하였다. 다음으로는 조율(照律) 기록을 확인하였다. 조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자 처벌 이전의 최종 단계이다. 이를 최초의 보고와 비교·대조하면 해당 사건이 마지막까지 동일한 범죄로 처리되었는지, 또는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다른 유형의 범죄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예컨대, 최초 보고 시에는 역적 모의로 확인되어 추국이 열렸으나 심리 결과 누군가가 거짓으로 역적 모의를 고했다는 '무고(誣告)'임이 밝혀졌을 경우 등이다. 그리고 최초의 보고와 조율 기록과 더불어 죄인의 최후진술, 그리고 추국청에서 작성한 결안까지 확인하여 분류된 유형이 정확한 것인지 재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각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유형 분류는 〈표 3-3〉과 같다.

〈표 3-3〉 《추안급국안》 사건의 유형별 분류

사건종류		개수	비율(%)	사건종류		개수	비율(%)
대분류 (십악)	소분류			대분류 (십악)	소분류		
모반(謀反)	역모	82	30.5%	부도(不道)	저주	6	2.2%
	흉소	50	18.6%	대불경(大不敬)	왕실물건절도	3	1.1%
	역모무고	36	13.4%	부도(不道)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	강상범죄	4	1.5%
				없음	가칭어사	1	0.4%
	괘서	30	11.2%		왕족사칭	1	0.4%
모대역(謀大逆)	흉언	24	8.9%		위조	4	1.5%
	어진훼손	1	0.4%		지시불이행	3	1.1%
	왕릉훼손	7	2.4%		탐관오리	1	0.4%
모반(謀叛)	전패훼손	5	1.9%	총계		269	100%
	사학	11	4.1%				

* 비율(%) = (사건 개수 ÷ 총 개수) × 100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그림 3-1〉 《추안급국안》 사건의 유형별 분류



〈표 3-3〉의 유형 분류를 통하여 볼 때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의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역모이며, 다음으로는 흉소, 역모무고, 꾀서, 흉언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역모(逆謀)는 곧 역적 모의를 뜻하는 것으로, 임금의 왕위에서 끌어내리려 하거나, 체제의 변혁 또는 전복을 위하여 다수의 인원이 모여 집단행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역모인데,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예비 단계에서 누군가의 밀고 또는 미심쩍은 행동을 하여 적발된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영조 4년(1728) 무신년(戊申年) 이인좌(李麟佐)의 주도로 충청·호남·영남 지역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 이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무신란(戊申亂)’⁴²⁾이나 철종 13년(1862) 왕족 이하전(李夏銓)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였다는 혐의로 김순성(金順性) 등이 처형된 사건, 고종 19년(1882) 구식 군대가 처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임오군란(壬午軍亂) 등이 역모에 속한다.

흉소(凶疏)는 흉악한 상소(上疏)를 말하는 것으로, 상소에 담긴 내용이 왕이 보았을 때 불경하게 느끼거나 모욕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생각될 때 ‘추국’을 통하여 적용한 죄이다.

역모무고(逆謀誣告) 또는 무고(誣告)는 다른 사람이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고발을 한 이들에게 적용한 죄로, 무고의 경우 ‘무고반좌(誣告反坐)’⁴³⁾라 하여 고발당한 이가 당했을 처벌을 동일하게 적용받았다. 《대명률》에서도 무고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조항까지 마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게끔 하였다.⁴⁴⁾ 《추안급국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모 사건의 경우 수일에 걸쳐 수차례 심문이 이어지고 그 대상자도 적게는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추국의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지는데, 이것은 역모 사건의 과정과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것뿐만

42) 오항녕 외 역주, 무신년(1728, 영조4) 역적 사건 추안(1)~(10), 『추안급국안』 41~47, 흐름출판사.

43) 《經國大典》 刑典 推斷 亂言.

44) 《大明律直解》 第22卷, 刑律, 誣告條.

아니라 무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괘서(掛書)는 일종의 익명서로 국가의 정책이나 정국의 운영에 반대하는 민중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삼거나,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거나, 타인을 모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⁴⁵⁾ 주로 공개된 장소에 붙여져 많은 이들이 보게끔 한 것으로, 이 가운데 반정부적 성격을 가진 괘서에 대하여 그 주모자를 붙잡아 추국을 열어 처벌하였다.⁴⁶⁾

흉언(凶言)은 말 그대로 ‘흉악한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나 타인을 속이거나 미혹하려는 말들이 여기에 속한다. 때로는 조정의 신하가 말실수를 하거나 공공연히 왕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경우 흉언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숙종 17년(1691) 황해도 검단 지역에서 ‘천지조화의 기밀(天機)’을 공부하였다고 자처하는 양인(良人) 차충걸이 통제사(統制使)를 지냈던 정부현(鄭傳賢)의 손자 정태창(鄭泰昌)을 찾은 일이 있었다. 차충걸은 정태창에게 ‘장차 한양이 망할 것이다’, ‘정씨(鄭氏)의 아이가 권력을 잡을 것이니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와 같은 말을 하였고, 정태창은 이를 흥흥한 언사로 여겨 황해감영(黃海監營)에 그를 고발하였다. 결국 차충걸은 의금부로 압송, 추국을 거친 후 참형을 당하였다.⁴⁷⁾ 이것이 바로 ‘흉언’ 사건의 한 예이다.

어진훼손은 헌종 3년(1837) 함경도 영흥부(永興府)에 위치한 태조(太祖)의 진전(眞殿)인 준원전(濬源殿)에 향로, 향합 등을 흠치기 위하여 들어간 농민 원대익(元大益)이 집기를 잘못 건드려 태조의 어진이 바닥에 떨어지며 부서지게 한 사건이다. 원대익은 이 일로 능지처사 되었다.⁴⁸⁾

왕릉훼손은 말 그대로 왕릉을 훼손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다. 왕릉에 심어진 수목을 훼손하거나, 왕릉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숙종 13년(1687) 왕릉을 보호하는 수호군(守護軍) 안계리(安繼李)라는 인물이 영릉(英陵)의 혼유석(魂遊石)을 도끼로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심문한 결

45) 이상배, 「조선 후기 한성부 괘서에 관한 연구」, 『향토서울』 53, 1993, 153쪽.

46) 괘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주모자를 체포할 수 없었던 경우도 존재하여, 진범의 실질적인 검거율은 약 60% 가량이다.(이상배, 위의 논문, 184쪽.)

47) 오항녕 외 역주, 신미년(1691, 숙종17) 차충걸(車忠傑) 추안, 『추안급국안』 30, 흐름출판사.

48) 오항녕 외 역주, 정유년(1837, 헌종3)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원대익(元大益) 심문 기록, 『추안급국안』 82, 흐름출판사.

과, 서원(書員) 이흥석(李興碩)이 안계리의 아들을 군역에 넣으려고 하였고, 안계리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흥석이 근무할 때 영릉을 훼손하여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짓을 벌인 것이 들통나 심문을 거쳐 능지처사되었다.⁴⁹⁾ 영조 1년(1725)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왕릉의 소나무를 몰래 잘라낸 죄로 유배를 갔던 최석산(崔錫山)이라는 자가 자신을 잡았던 능졸(陵卒) 무리에 게 앙심을 품고 장릉(長陵) 정자각 부근에 불을 질렀고, 이윽고 붙잡혀 능지처사되었다.⁵⁰⁾

전패훼손은 조선의 궁궐이나 지방의 객사 등에 보관된,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훔치거나 훼손한 것을 말한다. 전패는 곧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으므로, 이를 파손하거나 도둑질하는 행위는 모반과 다름없이 취급되었다. 현종 12년(1671), 경기도 연천현에서 전패가 사라진 일이 일어났다. 이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관역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관노(官奴) 애립(愛立)이 붙잡혔고, 심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 애립은 범행 동기를 자백하였는데, 현재의 연천현감에게 잡혀 관역을 피해 도망다닌 것으로 매질을 심하게 당하리라 걱정하였고, 마침 어디선가 전패가 사라지면 현감이 파직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몰래 훔쳐내어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결국 애립은 능지처사 되었다.⁵¹⁾

사학(邪學)은 본디 성리학에 반대되는 학문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추안급국안》에서는 조선후기 전해진 천주교 신앙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었다. 《추안급국안》에 담긴 사학 사건은 모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조선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순조 즉위 이후의 기록이다.⁵²⁾

현종 5년(1839)에는 천주교 선교를 위하여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온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인 로랑 조제프 마리위스 앙베르(L.J.M Imbert, 한국명 범세형), 자크 샤스탕(Jacques H. Chastan, 한국명 정아각백), 피에르 모방(Pierre P. Maubant, 한국명 나백다록) 등 세 명의 프랑스인과 이들을 도운 역관(譯官) 유진길(劉進吉)을 심문한 일이 있다. 이들은 천주교 신앙을 가졌는데,

49) 오항녕 외 역주, 정묘년(1687, 숙종13) 안계리(安繼李) 추안, 『추안급국안』 28, 흐름출판사.

50) 오항녕 외 역주, 을사년(1725, 영조1) 죄인 최석산(崔錫山) 등 추안, 『추안급국안』 41, 흐름출판사.

51) 오항녕 외 역주, 신해년(1671, 현종12) 전패를 훔친 죄인 애립(愛立) 심문 기록, 『추안급국안』 21, 흐름출판사.

52) 심재우, 「1801년 천주교 유배인의 현황과 유배지에서의 삶」, 『한국문화』87, 2019, 273-274쪽.

이를 두고 ‘다른 나라와 내통하고 연락한 것은, 무엇인가 계획하여 장차 이루려고 했던 것’이라는 혐의로 심문하고, 이후 사학 죄인으로 규정하여 사형에 처했다.

저주는 궁중에서 발생한 저주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인조 23년(1645) 봉림대군의 세자책봉을 둘러싼 저주 사건⁵³⁾이나 숙종 27년(1701) 희빈장씨의 무고(巫蠱)로 인현왕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⁵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강상범죄는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즉 강상(綱常)의 윤리를 어긴 죄를 통칭하는 것이다. 순조 29년(1829) 경상도 순흥부(順興府)에서 농사를 짓던 김현욱(金賢煜)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알고보니 범인이 아들 김말손(金末孫)이었다. 평소 아버지 김현욱의 질책에 오랫동안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틈을 타 팽이로 머리를 쳐 숨지게 한 것이다. 이에 김말손은 강상에 변고를 일으켰다 하여 능지처사 되었다.⁵⁵⁾ 이 사건 이외에도 노비가 상전을 살해하거나, 첩이 가장을 고발하는 등의 사건이 《추안급국안》에 기록되어 있다.

왕실물건절도는 왕실에 속하는 각종 물건을 훔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조 35년(1759) 발생한 숙빈 최씨 사당의 휘장(揮帳) 절도 사건이나⁵⁶⁾ 영조 39년(1763) 궁중 내시 김중광(金重光)과 하인 전유득(田有得) 등이 금·은으로 된 어기(御器), 비녀, 은잔대(銀蠡臺), 은젓가락 등을 훔쳐내 녹여서 팔아치운 사건⁵⁷⁾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십악’에 속하지 않음에도 역모 내지는 이에 준하는 죄로서 다스려진 사건들이 있다. 바로 가칭어사, 왕족사칭, 위조, 지시불이행, 탐관오리의 유형이 그것이다.

가칭어사는 영조 32년(1756) 박석명(朴錫命)이라는 자가 스스로를 어사(御使)라 거짓으로 칭했던 사건을 말한다. 박석명은 어사를 사칭하다가 충청도 공주

53) 오항녕 외 역주, 병술년(1646, 인조24) 저주(呪呪) 역적 의정(義貞) 등 추안, 『추안급국안』 28, 흐름출판사.

54) 오항녕 외 역주, 신사년(1701, 숙종27) 숙정(淑正)·설향(雪香) 등 추안, 『추안급국안』 35, 흐름출판사.

55) 오항녕 외 역주, 기축년(1829, 순조29) 시부(弑父) 죄인 김말손(金末孫) 국안, 『추안급국안』 81, 흐름출판사.

56) 오항녕 외 역주, 기묘년(1759, 영조35) 죄인 현창(玄昶) 등 추안, 『추안급국안』 65, 흐름출판사.

57) 오항녕 외 역주, 계미년(1763, 영조39) 죄인 전유득(田有得)·김중광(金重光) 등 추안, 『추안급국안』 65, 흐름출판사.

(公州)에서 붙잡혔다. 그런데 스스로를 무신란에 가담하였던 태인현감(泰仁縣監) 박필현(朴弼顯)의 아들이라 칭하였고, 이에 역적이 관계된 일이라 하여 추국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어진 심문 결과 박필현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심문을 이어가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⁵⁸⁾

왕족사칭은 말 그대로 자신이 왕족이라 사칭한 사건으로, 숙종 2년(1676) 처경(處瓊)이라는 중이 스스로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유복자이자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의 사촌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정릉(貞陵)의 승려들을 억박지르고, 정릉참봉에게서 옥불(玉佛)을 빼앗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수차례 심문과 대질심문 결과 이것이 거짓임을 밝혀내었고, ‘십악’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그 실상이 ‘십악’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하여 즉시 참형에 처했다.⁵⁹⁾

위조(僞造)는 말 그대로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 만드는 것으로, 《추안급국안》에는 관청의 도장이나 족보를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등의 사건이 담겨 있다. 철종 12년(1861)에 일어난 사건이 한 예이다.

경기도 파주 근방에 살고있던 파평 염씨(坡平 廉氏) 집안의 염종수(廉宗秀)는 철종의 외가 집안이 자손이 끊어진 용담 염씨(龍潭 廉氏)라는 것을 알고 용담 염씨의 족보를 가져다 칼로 긁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넣었다. 그리고 이 족보와 함께 자신이 철종의 외숙부라는 상소를 올려 벼슬을 하는 등 권세를 누렸다. 그러나 이후 강화도(江華島)에 살고있던 진짜 파평 염씨 염보길(廉輔吉)이 염종수가 족보를 위조한 것이라 고하였고 결국 염종수는 사형을 당하였다.⁶⁰⁾

지시불이행은 다소 독특한 성질의 종류로, 《추안급국안》에는 총 세 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모두 영조 48년(1772) 일어난 일인데, 왕이 내린 관직을 거부하거나 영조가 추진한 탕평책을 반대하는 세력을 묵인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죄를 물어 《추안급국안》에까지 기록된 것이다.⁶¹⁾

58) 오항녕 외 역주, 병자년(1756, 영조32) 죄인 박석명(朴錫命) 추안, 『추안급국안』 64, 흐름출판사.

59) 오항녕 외 역주, 병진년(1676, 숙종2) 요승(妖僧) 처경(處瓊) 심문 기록, 『추안급국안』 22, 흐름출판사.

60) 오항녕 외 역주, 신유년(1861, 철종12) 죄인 염종수(廉宗秀) 심문 기록, 『추안급국안』 84, 흐름출판사.

61) 오항녕 외 역주, 임진년(1772, 영조48) 죄인 한필수(韓必壽) 등 추안, 『추안급국안』 66, 흐름출판사.

탐관오리는 영조 51년(1775) 남양부사(南陽府使) 박규수(朴奎壽)가 환곡(還穀)을 몇대로 팔아버리는 등으로 재물을 얻어 처벌한 사건의 기록이다.

제 2 절 역모 사건의 추이와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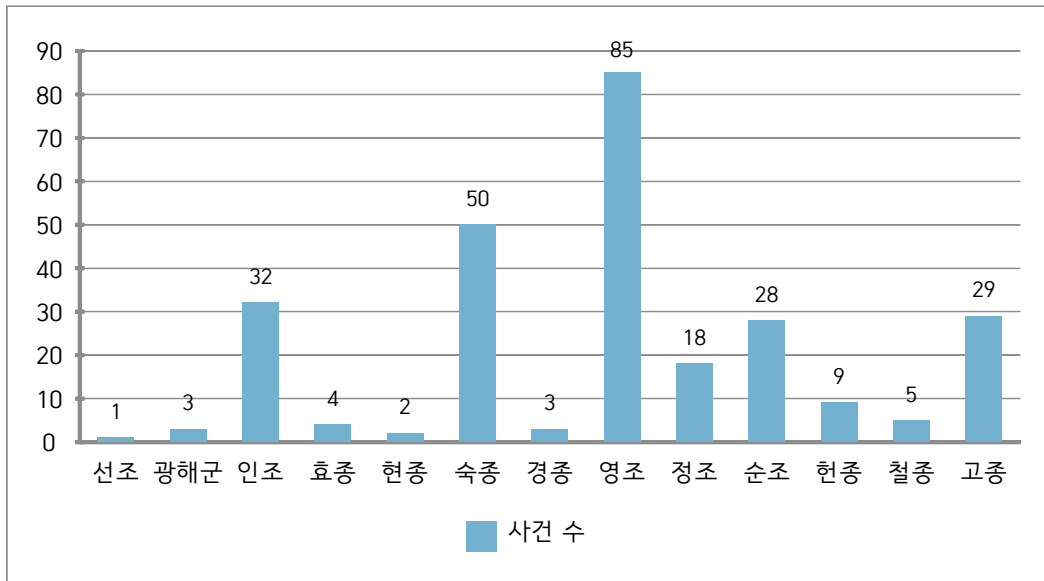
이렇게 《추안급국안》에서 다룬 사건들은 중대한 역적모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던 상소문이나 궤서 사건, 사학(邪學)으로 치부되었던 천주교도 관련 사건, 강상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총 269건에 이른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추국청이 개설될 정도로 중대하게 여겨졌다. 이 269가지 사건들을 시기별·왕별로 분류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추안급국안》 사건의 연대별·왕별 분류

연대	1601~1701						1701~1801			1802~1901				계
왕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사건수	1	3	32	4	2	50	3	85	18	28	9	5	29	269

이를 그래프로 옮겨보면 아래 <그림 4-1>과 같다.

〈그림 3-2〉 《추안급국안》 사건의 연대별·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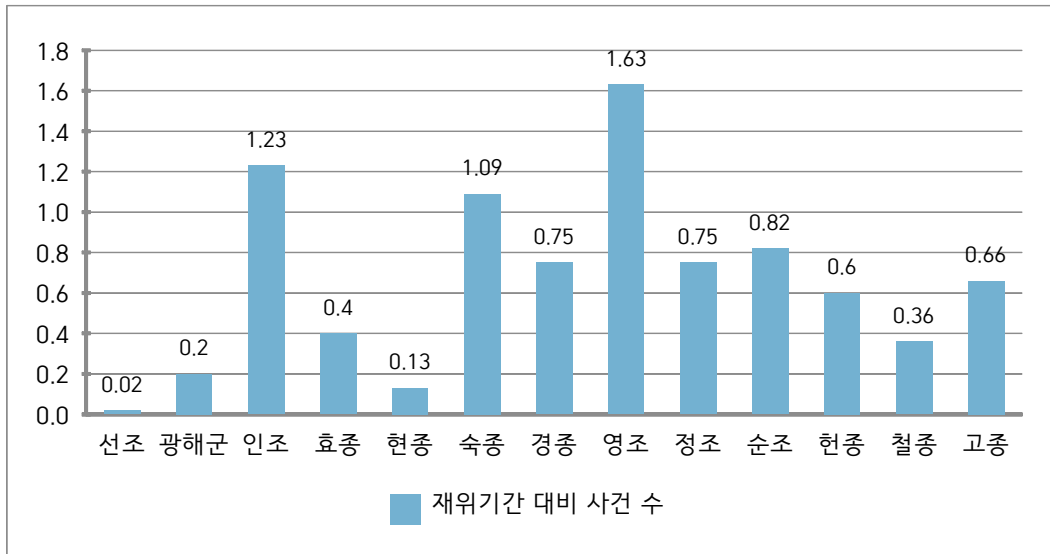
〈표 3-4〉와 〈그림 3-2〉를 통하여 보면 영조 재위기(1724~1776)에 가장 많은 85건의 추국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숙종 재위기(1674~1720)가 50건으로 두 번째, 인조 재위기(1623~1649)가 32건으로 세 번째로 많다. 그리고 고종 재위기(1863~1907)가 29건, 순조 재위기(1800~1834)가 28건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이처럼 《추안급국안》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특정 왕의 재위기에 사건들이 밀집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각 왕들의 재위기간 대비 사건 수를 계산하여 보면,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볼 수 있다.⁶²⁾

62)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첫 사건은 선조 34년(1601) 진행된 길운절(吉雲節) 반란 사건의 추국이다. 따라서 선조 34년(160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기록되어있지 않으므로 선조 재위기 41년 동안 추국청이 개설될 정도의 사건이 1건 뿐이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표 3-5〉 《추안급국안》 사건의 왕별 재위기간 대비 사건수

왕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재위기간(년) (A)	41	15	26	10	15	46	4	52	24	34	15	15	44
사건수 (B)	1	3	32	4	2	50	3	85	18	28	9	5	29
사건수 /재위기간 (B/A)	0.02	0.20	1.23	0.40	0.13	1.09	0.75	1.63	0.75	0.82	0.60	0.36	0.66

〈그림 3-3〉 《추안급국안》 사건의 왕별 재위기간 대비 사건수



〈표 3-5〉와 〈그림 3-3〉은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들의 수를 각 왕별로 분류하고, 이를 각 왕의 재위기간으로 나누어 연 평균 사건의 수를 도출해 내어 표현한 것이다. 이를 보면 〈표 3-4〉·〈그림 3-2〉와는 다른 양태가 나타난다. 사건의 수만으로 헤아렸을 때는 영조-숙종-인조-고종-순조 순서로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재위기간과 함께 계산하니 사건은 영조(연 평균 1.63건)-인조(연 평균 1.23건)-숙종(연 평균 1.09건)-순조(연 평균 0.82건)-정조·경종(연 평균 0.7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연 평균 사건 수가 많은 시기는 대체로 정치적 격변기이거나(인조·숙종 등),

개혁 군주의 통치기(영조·정조 등), 또는 사학(邪學)이라 하여 천주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순조), 임오군란·갑신정변 등이 잇달아 일어난 시기(고종) 등으로 파악된다. 해당 시기의 특징이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유형의 사건이 많거나 적게 일어났을까? 앞서 정리한 《추안급국안》 속 사건들의 유형을 각 왕의 재위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3-6>와 같다.

<표 3-6> 《추안급국안》 사건 종류의 국왕별 분류

왕조 사건종류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역모	1	1	21	1		8		18	7	4	2	3	16	82
흉소		2		1		8	1	15	9	2	5		7	50
역모무고			6	2		16		11		1				36
괘서						4		14	1	11				30
흉언						5	2	14		2			1	24
어진훼손											1			1
왕릉훼손						5		2						7
전패훼손					2			2		1				5
사학										6	1		4	11
저주			4			2								6
왕실물건 절도								3						3
강상범죄			1							1		1	1	4
가칭어사								1						1
왕족사칭						1								1

왕조 사건종류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위조						1		1	1			1		4
지시불이행								3						3
탐관오리								1						1
총계	1	3	32	4	2	50	3	85	18	28	9	5	29	269

〈표 3-6〉을 통하여서는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앞서 밝혔듯 정치적 격변기나 개혁군주 통치기 등의 시기에 역모 사건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숙종 재위기에는 역모 사건보다 타인을 거짓으로 고변한 역모 무고 사건이 두 배 더 일어났다는 점인데, 이는 숙종이 재위하던 시기는 ‘환국(換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정국이 급격하게 변하던 격랑의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순조 재위기부터 사학 사건이 《추안급국안》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밝혔듯 ‘사학’이라 규정된 천주교 신앙과 그 신도들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순조 즉위 직후부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각 국왕의 재위기가 기준이 아닌 50년 단위로 분절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각종 역모 사건들이 균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⁶³⁾

〈표 3-7〉 《추안급국안》 사건 종류의 50년 단위 분류

50년 단위 사건종류	1601 ~1650	1651 ~1700	1701 ~1750	1751 ~1800	1801 ~1850	1851 ~1892	합계
역모	23	9	9	16	6	19	82

63) 다만 《추안급국안》은 1601년부터 1892년까지의 기록이므로, 마지막 1851년부터의 분류는 50년이 아닌 1892년까지인 42년간만을 해야린다.

50년 단위 사건종류	1601 ~1650	1651 ~1700	1701 ~1750	1751 ~1800	1801 ~1850	1851 ~1892	합계
홍소	2	6	14	14	7	7	50
역모무고	6	11	13	5	1		36
괘서		3	9	7	11		30
홍언		4	12	5	2	1	24
어진훼손					1		1
왕릉훼손		4	2	1			7
전패훼손		2	2		1		5
사학					7	4	11
저주	4	1	1				6
왕실물건 절도				3			3
강상범죄	1				1	2	4
가칭어사				1			1
왕족사칭		1					1
위조		1		2		1	4
지시불이행				3			3
탐관오리				1			1
총계	36	42	62	58	37	34	269

〈표 3-7〉과 같이 50년 단위로 분절하여 살펴본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01~1750년에 총 62건, 1751~1800년에 총 58건으로, 18세기에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사건만이 집중되어 일어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종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전체 사건 수가 적은 1601~1650년이나 1851년 이후의 시기에서 역모 사건

은 각각 23건, 19건으로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비율로 따져본다면 1601~1650년이 63.9%, 1851년 이후가 55.9%로 역모 사건이 해당 시기 일어난 사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해당 시기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대하게 다루어졌던 사건들의 처분 결과와 이에 적용한 세 부 규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심문 도중 물고(物故)되어 추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하거나, 《추안급국안》 기록이 일부 훼손되거나 탈락되어 사건의 전말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정리해보면 <표 3-8>과 같다.

<표 3-8> 《추안급국안》 사건 유형별 처분 결과 및 적용 규정

구분	처분 결과	적용 규정	내용
역모	사형_능지처사	대명률 모반대역조	‘사직을 위협하려고 모의하였으면 주범, 공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한다.’ ⁶⁴⁾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⁶⁵⁾
흉소	사형_참형	경국대전 추단	‘난언(亂言)을 하여 윗사람을 범하고 그 정황이 나빠 해롭게 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⁶⁶⁾
		대명률 모반대역조	‘사직을 위협하려고 모의하였으면 주범, 공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한다.’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정배	-	사형을 감하고 절도(絶島)로 유배보내는 것

64) 《大明律直解》 第18卷, 刑律, 謀反大逆條.

65) 《大明律直解》 第28卷, 刑律, 死囚覆奏待報條.

구분	처분 결과	적용 규정	내용
역모무고	사형_참형	경국대전 추단	‘난언(亂言)을 하여 윗사람을 범하고 그 정황이 나빠 해롭게 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그리고 무고(誣告)한 자는 도리어 죄를 입는다.’ ⁶⁷⁾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괘서	사형_능지처사	대명률 모반대역조	‘사직을 위협하려고 모의하였으면 주범, 공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한다.’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사형_참형	경국대전 추단	‘난언(亂言)을 하여 윗사람을 범하고 그 정황이 나빠 해롭게 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흉언	사형_참형	경국대전 추단	‘난언(亂言)을 하여 윗사람을 범하고 그 정황이 나빠 해롭게 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대명률 조요서요언조	‘참서(讖書)·요서(妖書)·요언(妖言)을 조작(造作)하고 전파하여 민중을 혼란스럽게 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⁶⁸⁾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정배	-	사형을 감하고 절도(絶島)로 유배보내는 것
		-	

66) 《經國大典》 刑典 推斷 亂言.

67) 《經國大典》 刑典 推斷 亂言.

68) 《大明律直解》 第18卷, 刑律, 造妖書妖言條.

69) 《大明律直解》 第18卷, 刑律, 謀反大逆條.

70) 《大明律直解》 第18卷, 刑律, 謀叛條.

71) 《大明律直解》 第18卷, 刑律, 盜內府財物條.

구분	처분 결과	적용 규정	내용
어진훼손	사형_능지처사	대명률 모반대역조	‘사직을 위협하려고 모의하였으면 주범, 공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한다.’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왕릉훼손	사형_능지처사	대명률 모반대역조	‘종묘·산릉 및 궁궐을 파훼하거나 음모한 자는 주범, 공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한다.’ ⁶⁹⁾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전패훼손	사형_능지처사	대명률 모반대역조	‘사직을 위협하려고 모의하였으면 주범, 공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한다.’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사학	사형_참형	대명률 모반조	‘모반이라 함은 본국을 배반하고 외국과 내통하는 것을 말한다. 음모를 함께한 자는 주범이나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형에 처한다.’ ⁷⁰⁾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저주	사형_능지처사	대명률 모반대역조	‘사직을 위협하려고 모의하였으면 주범, 공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한다.’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72) 《大明律直解》 第19卷, 刑律, 謀殺祖父母父母條.

73) 《大明律直解》 第20卷, 刑律, 奴婢毆家長條.

74) 《大明律直解》 第19卷, 刑律, 殺死奸夫條.

75) 《大明律直解》 第18卷, 刑律, 造妖書妖言條.

76) 《大明律直解》 第7卷, 戶律, 那移出納條.

구분	처분 결과	적용 규정	내용
왕실물건 절도	사형_참형	대명률 도내부재물조	‘궁내(宮內) 창고의 재물을 훔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왕이 사용하는 물건을 훔친 자는 모두 이 죄에 해당한다.’ ⁷¹⁾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강상범죄	사형_능지처사	대명률 모살조부모부모조	‘조부모·부모 등을 살해할 음모를 계획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이미 실행한 자는 모두 능지처사에 처한다.’ ⁷²⁾
		대명률 노비구가장조	‘노비(奴婢)가 가장을 구타한 경우 참형에 처하고, 살해한 자는 능지처사에 처한다.’ ⁷³⁾
		대명률 살사간부조	‘처나 첩이 타인과 간통하고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하면 능지처사에 처한다.’ ⁷⁴⁾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가칭어사	-	-	물고(物故) 당하여 확인할 수 없음
왕족사칭	사형_참형	대명률 조요서요언조	‘참서(讖書)·요서(妖書)·요언(妖言)을 조작(造作)하고 전파하여 민중을 혼란스럽게 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⁷⁵⁾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구분	처분 결과	적용 규정	내용
위조	사형_참형	대명률 조요서요언조	‘참서(讞書)·요서(妖書)·요언(妖言)을 조작(造作)하고 전파하여 민중을 혼란스럽게 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대명률 모반조	‘모반이라 함은 본국을 배반하고 외국과 내통하는 것을 말한다. 음모를 함께한 자는 주범이나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형에 처한다.’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 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
지시불이행	정배	-	사형을 감하고 절도(絶島)로 유배보내는 것
탐관오리	정배	대명률 나이출납조	‘수령이 출납을 정당하게 하지 않고 수입 지출을 조작하고 어지럽게 하여 유용하는 자는 감수자도죄(監守自盜罪)의 예에 준하여 처벌한다’ ⁷⁶⁾

〈표 3-8〉을 통하여 보면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은 능지처사 또는 참형, 즉 사형(死刑)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사형의 집행은 《대명률》 사수복주대보조에 의거, ‘십악’에 해당하는 죄로 취급되어 ‘때를 가리지 않고 즉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시 왕에 의하여 죽을 죄이지만 특별히 사형을 면하고 절도(絶島)로 유배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십악’에 속하는 죄였으며, 이는 역모 또는 역모와 비슷한 수준의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처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안급국안》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인물은 약 4,200여 명에 달하며, 사건 당 평균 약 15.9명이 관여된 것으로 나타난다.⁷⁷⁾ 이렇게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사건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 적게는

77) 해당 수치는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헤아린 것이며, ‘아무개 등’, ‘아무개 외 2명’ 등으로 표기된 경우 아무개 이외의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 경우는 헤아리지 못하였다. 또한 각각의 사건에 주범·종범으로 참여하거나 증인 등으로 얽혀있는 이들만 셈한 것으로 추국을 맡은 추국관, 즉 대신들이나 문사낭청은 포함하지 않았다.

단 한 명에 대한 기사만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한 사건에 수백여 명이 연루되어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 3-9>, <표 3-10>과 같다.

<표 3-9> 《추안급국안》 사건의 연루 인원 수별 사건 종류

인원 수 사건종류	10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 이상	50명 미만 30명 ~ 이상	30명 미만 10명 ~ 이상	10명 미만 5명 ~ 이상	5명 미만	합계
역모	5	5	12	22	22	16	82
흉소	1	1	1	3	12	32	50
역모무고	0	0	3	8	11	14	36
괘서	0	0	0	8	7	15	30
흉언	0	0	0	3	10	11	24
어진훼손	0	0	0	0	0	1	1
왕릉훼손	0	0	0	2	3	2	7
전패훼손	0	0	0	0	1	4	5
사학	0	0	0	4	4	3	11
저주	1	0	1	3	1	0	6
왕실물건절도	0	0	0	3	0	0	3
강상범죄	0	0	0	1	0	3	4
가칭어사	0	0	0	0	0	1	1
왕족사칭	0	0	0	1	0	0	1
위조	0	0	0	1	0	3	4
지시불이행	0	0	0	0	0	3	3
탐관오리	0	0	0	0	0	1	1
총계	7	6	17	59	71	109	269
비율(%)	2.6%	2.2%	6.3%	21.9%	26.4%	40.5%	100%

〈표 3-10〉 《추안급국안》 사건 수별 총 인원

인원 수 구간별 합계	10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이상	30명 미만 10명 이상	10명 미만 5명 이상	5명 미만	합계
인원 수 (명)	1,474	452	637	958	503	255	4,279
사건 수 (건)	7	6	17	59	71	109	269
인원 수 비율(%)	34.5%	10.6%	14.9%	22.4%	11.8%	6.0%	100%

〈표 3-9〉, 〈표 3-10〉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건이 역모에 해당될 경우 연루된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역모 사건에 연루된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가 5건, 100명 미만~50명 이상인 경우가 5건, 50명 미만~30명 이상인 경우가 12건으로, 총 22건이다. 해당 구간의 전체 사건 수가 30건이므로, 이는 약 73.3%에 달하는 수치이다. 나머지 30명 미만의 사건 중 역모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1%임을 감안하면, 역모 사건일수록 수많은 인원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추안급국안》의 사건 가운데 연루 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건은 총 7건으로, 전체 사건 중 2.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7건의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총 1,474명으로 《추안급국안》에 등장하는 전체 인물의 약 34.5%를 차지한다. 그만큼 이 소수의 사건들이 당대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었음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⁷⁸⁾

예컨대 영조 4년(1728) 3월 이인좌의 주도로 일어난 무신란(戊申亂)의 경우⁷⁹⁾, 주모자 이인좌와 그 잔당들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 처벌에 이르기까지

78)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광해군 즉위년(1608) 발생한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璉) 역모 사건, 광해군 9년(1617) 인목대비 폐위 상소와 의견 수렴, 인조 1년(1623) 인조반정과 관련하여 궁중에서 일어난 저주 사건,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 인조 24년(1646) 봉림대군 세자 책봉을 두고 일어난 궁중 저주 사건, 영조 4년(1728) 무신란(戊申亂), 영조 6년(1730) 무신란의 잔당들에 의해 일어난 궁궐 침입 사건 등이다.

79) 이인좌의 난 또는 무신란(戊申亂)의 준비와 전개과정, 관련 기록들에 대하여서는 변주승·문경득, 「18세기 전라도 지역 무신란의 준비과정-「무신역옥추안」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93, 2013; 변주승·문경득, 「18세기 전라도 지역 무신란의 전개과정」, 『인문과학연구』 39,

약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무신란에 연루되어 추국청에서 심문을 받고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인물들은 무려 316명에 달하는 등 당시 조정의 행정력의 대부분이 집중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⁸⁰⁾

각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신분이나 직책도 무척 다양하였다.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인물들의 신분이나 직책은 수백 여개에 달하는데, 당시 신분제에서 최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국왕의 일가족이나 의정부의 삼정승(三政丞)이 있는가 하면 내관·승려·노비 등 사회 하층민까지 다양한 대상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역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국장에서 심문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2013; 문경득, 「조선 후기 심문 진술 기록의 사료비판 방법론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3, 2017; 문경득,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 연구」, 전주대 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7. 등 참고.

80) 무신란의 316명보다 더 많은 385명이 《추안급국안》에 등장하는 사건도 있다. 광해군 9년(1617) 인목왕후 폐위를 청하는 상소와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 광해군이 인목왕후 폐비를 두고 행한 일종의 여론조사였다. 그런데 이는 상소의 내용과 개인의 의견만이 기록되어있는 등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다른 추국 기록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맺음말

《속대전》 형전 추단(推斷)에서는 추국을 여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악역(惡逆)에 관계되는 경우, 임금을 속이는 부도(不道)한 짓을 한 경우, 대훈(大訓)을 범한 경우(干犯大訓)를 제외하고는 설국(設鞫)하지 아니한다.⁸¹⁾

해당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듯 조선시대에는 추국을 열어 심리(審理)하는 범죄 사건의 종류는 몹시 한정적이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국을 시행한다는 것은 의금부로 하여금 죄인을 도성으로 압송하게 하고, 범죄를 조사하는 임시 기구인 추국청을 마련하고, 왕 또는 왕을 대신하여 추국을 주관할 위임 대신과 의금부 당상 및 문사낭청을 차출하여 죄인에 대한 심문을 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죄인에 대한 심문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든 사건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진행 되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추국을 통하여 본말(本末)을 따져야 하는 범죄는 당대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여졌던 심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들을 다룬 추국의 기록이 바로 《추안급국안》이다.

《추안급국안》은 추국을 통해 다루어진 역모 등과 같이 심각한 범죄들의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사건별로 엮어 책으로 만든 것이다.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00여 년간 진행한 추국과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심문·진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괄의 난·무신란(戊申亂)·임오군란 등 당대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반란 사건부터 천주교 탄압에 관한 사건, 각종 상소나 궤서를 둘러싼 사건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등의 강상범죄(綱常犯罪)까지 다양한 종류의 범죄 사건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대명률》에서 정의한 ‘십악(十惡)’에 해당되

81) 《續大典》 刑典 推斷 關係惡逆誣上不道.

는 범죄들이라는 것이다.

《대명률》은 명나라에서 편찬한 법전인데,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형전(刑典)을 보면 ‘대명률을 적용한다’고 하여 《대명률》의 규정을 조선의 형법으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국청에서 다루어지는 역모를 비롯한 사건들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명률》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명률》에서는 역모에 대하여 ‘십악’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십악’은 《대명률》 가장 첫 권에 제시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의 집합체로,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의 열 가지 죄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십악’은 대개 왕조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왕조의 권위를 해하는 범죄, 인명(人命)에 관한 범죄, 강상범죄 등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하며,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유교 윤리의 근간을 해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교적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엄중히 다루어야 하는 범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발현된 것이 바로 조선의 추국장이며, 이것의 기록이 바로 《추안급국안》인 것이다.

《추안급국안》에 담긴 사건은 총 269건이다.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백여 년간, 13명의 국왕 재임기에 일어나 추국청에서 심리한 사건들이다. 국왕 각각의 재임기간이 달라 사건의 수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 평균 사건 수로 계산하면 영조, 인조, 숙종, 순조 순으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 평균 사건 수가 많은 시기는 대체로 정치적·사회적 격변기이거나 개혁 군주의 통치기, 또는 조정을 위협하는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던 때이다. 예컨대 거듭되는 환국(換局)으로 정국이 급변하던 숙종 재위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조 재위기, 탕평책을 펼쳐 정치 개혁을 꿈꾸었던 영조 재위기 등이 그것이다. 즉, 왕조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다른 때보다 높아졌던 시기에 역모 사건이 다른 시기보다 많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십악’에 대입되거나, 그에 준하여 처리되었다. 역모·역모무고·괘서·흉소·왕릉훼손 등이 ‘십악’ 중 모반(謀反)·모대역에 해당되었는데, 이는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 중 약 87%에 달하

는 수치로 대개 왕조의 권위와 정통을 위협하는 사건들이었다. 사학(邪學)의 경우 ‘본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와 몰래 통하’는 모반(謀叛)에 해당되어 당시 천주교 신앙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강상범죄에 속하는 사건들은 ‘십악’의 불효·불목·불의 등에 속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사상적 기반인 유교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였기에 엄하게 다스려졌다.

한편 사건의 심리 결과 주모자의 사형(死刑)으로 결정된 경우는 그것이 능지처사이든 참형이든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되었다. 이는 《대명률》의 사수복주대보 ‘십악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해야 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다. 즉 추국청에서 다루어져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십악’에 해당되는 죄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취급된 것이다. 이는 곧 《추안급국안》의 사건들은 ‘십악’에 속하므로, 대부분이 역모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추안급국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약 4,200여 명으로, 사건 당 평균 약 15.9명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사건의 양상에 따라 적게는 단 한 명만 이, 많게는 수백여 명이 연루되어 심리가 진행되어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책 또한 무척 다양하여 기록된 것만 헤아려도 수백여 개에 달함이 확인된다. 즉 역모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왕 일가나 우의정·좌의정 등 의정부의 삼정승을 비롯하여 관료·내관·일반 백성·승려·노비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추국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심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추안급국안》은 조선후기 일어났던 역모 사건에 관한 기록으로, 개별 사건의 양상부터 전개와 결말,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안급국안》은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에 실려 있는 사건의 기록을 보다 면밀하고 상세히 검토하고 그 전말을 정확히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안급국안》의 전반적인 검토 또한 무척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가 바로 《추안급국안》의 전체적인 검토와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각종 사건들이 역모 내지는 역모에

준하는 사건에 속하여 취급되었고, 당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추국을 통해 처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왕에 의해서만 개좌가 가능한 추국은 당시 행정력이 집중되었던 것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러한 추국을 행할 정도의 사건들에는 기존의 통념과 같이 역적 모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흥흥한 말을 일삼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왕릉을 훼손하거나, 왕실의 물건을 훔치거나, 천주교 신앙을 가지거나, 아버지나 주인을 죽이는 등의 강상범죄까지도 추국을 열어 심리를 진행할만한 사건에 해당된 것이다.

단지 조정에 대한 반란행위 뿐만 아니라 사건들의 유형이 몹시 다양하였다는 점과 연루된 이들의 신분·직책도 무척 다양하였음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심리 과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당대의 국왕을 비롯한 조정이 지닌 각종 역모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었으며, 시대마다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 또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각각의 시대나 269건의 사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전말을 살펴볼 수는 없었기에, 이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推案及鞫案』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經國大典註解』

『大全通編』

『大明律直解』

〈문헌자료〉

오항녕 외 역주. (2014). 『추안급국안』 1-90. 흐름출판사.

유승희. (2016). 『조선 민중 역모 사건』. 역사의아침.

이상배. (1999). 『조선후기 정치와 궤서』. 국학자료원.

한국학문헌연구소. (1984). 『추안급국안』 1-30. 아세아문화사.

〈연구논문〉

고성훈. (1994). “朝鮮後期 變亂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08). “正祖年間 三水府 逆謀事件의 추이와 성격”. 「사학연구」 90. 한국사학회.

_____. (2009). “1601년 제주도 역모 사건의 추이와 성격”. 「사학연구」 96. 한국사학회.

고수연. (2008). “1728년 戊申亂과 淸州地域 士族動向”.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11). “1728년 湖西地域 戊申亂의 叛亂軍 성격”. 「역사와 실학」 44. 역사실학회.

- _____. (2019). “『推案及鞫案』에 기록된 戊申餘黨 謀反事件의 樣相”. 「역사와 담론」 92. 호서사학회.
- 김세봉. (2001). “효종초 김자점 옥사에 대한 일연구”. 「사학지」 34. 단국사학회.
- 김영석. (2013).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법사학연구」 48. 한국법사학회.
- 김용흠. (2006). “조선후기 역모 사건과 변통론의 위상 - 김자점 역모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 한국사회사학회.
- 김우철. (2008). “仁祖 24년(1646) 安益信 謀反 사건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 _____. (2010). “인조 9년(1631) 鄭澣 모반 사건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39. 동양고전학회.
- _____. (2010).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 _____. (2010). “철종 2년(1851) 李明燮 모반 사건의 성격”. 「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 _____. (2010). “憲宗 10년(1844) 懷平君 李元慶 謀反 사건과 그 의미 - 哲宗 즉위의 숨겨진 배경”. 「역사와 담론」 55. 호서사학회.
- _____. (2012).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鄭氏 眞人 수용 과정 - 『鄭鑑錄』 탄생의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60. 조선시대사학회.
- 김정자. (2019). “순조 전반기 정국의 동향과 李審度 獄事의 전말 - 『親鞫日記』와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 _____. (2021). “헌종 후반~철종 초반 정국과 정치 세력의 동향 - 成齋 趙秉鉉 賜死 사건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96. 조선시대사학회.
- 문경득. (2014).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DB 구축 및 창작소재 콘텐츠 개발

- 방안”. 「인문콘텐츠」 35. 인문콘텐츠학회.
- _____. (2017). “조선 후기 심문 진술 기록의 사료비판 방법론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3. 조선시대사학회.
- _____. (2017).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 연구”,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와 운용 -무신란(戊申亂) 당시 경상도 반란군 방어를 중심으로-”. 「군사」 110. 국방보 군사편찬연구소.
- 박 경. (2012). “十惡 개념의 수용을 통해 본 조선 전기 사회윤리의 구축 과정”. 「사학연구」 106. 한국사학회.
- 변주승·문경득. (2013). “18세기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의 준비과정 - 「무신역옥추안(戊申逆獄推案)」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9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13). “18세기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의 전개과정”. 「인문과학연구」 3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서정민. (2012). “朝鮮初期 誣告罪와 反坐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재우. (2007). “조선시대 형률의 운용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10). “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3. 한국학중앙연구원.
- _____. (2019). “1801년 천주교 유배인의 현황과 유배지에서의 삶: 『사학징의(邪學懲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윤 정. (2019). “肅宗代明史辨誣의 정치사적 의미 - 三藩의 반란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 -”. 「역사와 실학」 70. 역사실학회.
- 이상배. (1993). “조선후기 한성부 패서에 관한 연구”. 「향토서울」 5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이선희. (2017). “19세기 전반 서울의 刑政運營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하경. (2018).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8).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한국학연구」 5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장희홍. (2006). “朝鮮後期 逆謀事件과 宦官의 內應”. 「역사와 실학」 29. 역사실학회.
- 정광호. (1975). “(해제)추안급국안”. 「민족문화」 1. 한국고전번역원.
- 정석중. (1983). “추안급국안의 민중사적 가치”. 「韓國學 文獻 研究의 現況과 展望」. 아세아문화사.
- 조운선. (2007). “英祖 6년 (庚戌年) 謀叛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2. 조선시대사학회.
- _____. (2008). “18세기 淸州지역의 謀反·掛書 사건”. 「역사와 담론」 50. 호서사학회.
- _____. (2009).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흠휼책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조선시대사학회.
- 조지만. (2006). “朝鮮時代 刑事法으로서의 《大明律》과 國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법사학연구」 34. 한국법사학회.
- 한승훈. (2019).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성덕. (2016). “조선후기 대일인식의 사회적 투영 사례 -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8. 강원대학교 사학회.

〈부표1〉 《추안급국안》 사건 목록 및 유형 분류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1	신축년(1601,선조34)	길운절(吉云節) 반역 사건	역모	
2	무신년(1608,광해군즉위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說) 심문 기록	역모	
3	정사년(1617,광해군9)	흉악한 상소[凶疏]와 의견 수렴	흉소	
4	정사년(1617,광해군9)	흉악한 상소, 흉서(凶書)와 밀계(密啓) 등	흉소	
5	계해년(1623,인조1)	인조반정 관련 범죄사건	저주	
6	계해년(1623,인조1)	역적 유전(柳索) 범죄 사건 문서	역모	
7	계해년(1623,인조1)	역적 이유림(李有林) 범죄 사건 문서	역모	
8	갑자년(1624,인조2)	역적 이괄(李适) 범죄 사건 문서	역모	
9	경오년(1630,인조8)	이경검(李景儉) 반역 사건	역모	
10	갑자년(1624,인조2)	김정립(金廷立) 사건	역모	
11	갑자년(1624,인조2)	박건갑(朴乾甲) 범죄 사건 문서	역모	
12	갑자년(1624,인조2)	박홍구(朴弘耆) 범죄 사건 문서	역모	
13	을축년(1625,인조3)	윤안형(尹安亨) 옥사 문서	역모	
14	을축년(1625,인조3)	박응성(朴應晟) 범죄 사건 문서	역모	
15	을축년(1625,인조3)	정윤복(鄭允福) 범죄 사건 문서	역모	
16	무진년(1628,인조6)	유효립(柳孝立) 범죄 사건 문서	역모	
17	무진년(1628,인조6)	송광유(宋匡裕) 옥사 문서	역모무고	
18	기사년(1629,인조7)	꽃치(耄致) 옥사 문서	강상범죄	
19	기사년(1629,인조7)	역적 이충경(李忠慶) 문서	역모	
20	경오년(1630,인조8)	한선내(韓善乃) 추안	역모	
21	경오년(1630,인조8)	김대기(金大器) 추안급국안	역모무고	
22	신미년(1631,인조9)	원충립(元忠立) 추안급국안	역모무고	
23	신미년(1631,인조9)	정한(鄭澣) 옥사 문서	역모	
24	임신년(1632,인조10)	임신년 역모사건	역모	
25	계유년(1633,인조11)	역적 임석간(林碩幹) 등 추안	역모무고	
26	계유년(1633,인조11)	이탁(李倬) 등 추안	역모	
27	을해년(1635,인조13)	역적 이기안(李基安) 등 추안	역모	
28	을해년(1635,인조13)	역적 박천건(朴天建) 등 추안	역모무고	
29	기묘년(1639,인조17)	나인[內人] 등 저주(呪呪) 옥사 추안	저주	
30	계미년(1643,인조21)	계미년 모역죄인 이정해 추안	역모	
31	갑신년(1644,인조22)	갑신년 사건기록(1)	역모	
32	갑신년(1644,인조22)	갑신년 사건기록(2)	역모	
33	갑신년(1644,인조22)	갑신년 사건기록(3)	역모무고	
34	병술년(1646,인조24)	역적 안익신(安益信) 등 추안	역모	
35	병술년(1646,인조24)	저주(呪呪) 역적 의정(義貞) 등 추안	저주	
36	정해년(1647,인조25)	저주(呪呪) 역적 예옥(禮玉) 등 추안	저주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37	신묘년(1651,효종2)	김자점(金自點)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	역모	
38	계사년(1653,효종4)	계사년 심문 기록	역모무고	
39	갑오년(1654,효종5)	갑오년 심문 기록	흉소	
40	병신년(1656,효종7)	서변(徐豆) 등 역적 사건 심문 기록	역모무고	
41	임인년(1662,현종3)	전패(殿牌)를 훔친 죄인 생이(生伊) 심문 기록	전패훼손	
42	신해년(1671,현종12)	전패를 훔친 죄인 애립(愛立) 심문 기록	전패훼손	
43	을묘년(1675,숙종1)	유필명(柳弼明) 심문 기록	흉소	
44	병진년(1676,숙종2)	제릉(齊陵) 방화(放火) 장득선(張得善) 심문 기록	왕릉훼손	
45	병진년(1676,숙종2)	요승(妖僧) 처경(處瓊) 심문 기록	왕족사칭	
46	경신년(1680,숙종6)	역적 허견(許堅)·이남(李爚) 심문 기록	역모	
47	경신년(1680,숙종6)	윤휴(尹頊)·박헌(朴堧)·이환(李煥) 심문 기록	흉소	
48	기사년(1689,숙종15)	이입신(李立身) 등 심문 기록	흉언	
49	경신년(1680,숙종6)	역적 오정창(吳挺昌)·정원로(鄭元老) 등 심문 기록	역모	
50	경신년(1680,숙종6)	오시수(吳始壽) 추안	흉언	
51	신유년(1681,숙종7)	박상한(朴相漢) 추안	괘서	
52	신유년(1681,숙종7)	허협(許浹)·양국정(梁國楨) 추안	역모무고	
53	임술년(1682,숙종8)	노계신(盧繼信) 추안	역모무고	
54	임술년(1682,숙종8)	역적 허새(許璽)·허영(許瑛) 추안	역모	
55	정묘년(1687,숙종13)	양우철(梁禹轍) 추안	괘서	
56	정묘년(1687,숙종13)	안계리(安繼李) 추안	왕릉훼손	
57	정묘년(1687,숙종13)	김성기(金成器) 추안	왕릉훼손	
58	무진년(1688,숙종14)	역적 여환(呂還) 등 추안	역모	
59	무진년(1688,숙종14)	이민재(李敏材) 추안	역모무고	
60	무진년(1688,숙종14)	김영준(金永俊) 추안	역모	
61	무진년(1688,숙종14)	박업귀(朴業貴) 추안	역모	
62	기사년(1689,숙종15)	김익훈(金益勳) 등 추안	역모무고	
63	기사년(1689,숙종15)	이사명(李師命) 추안	흉언	
64	기사년(1689,숙종15)	오두인(吳斗寅) 등 친국(親鞠) 추안	흉소	
65	신미년(1691,숙종17)	김영하(金永河) 추안	역모무고	
66	신미년(1691,숙종17)	차충걸(車忠傑) 추안	흉언	
67	임신년(1692,숙종18)	이첨한(李瞻漢) 추안	역모무고	
68	계유년(1693,숙종19)	연최적(延最績) 추안	흉소	
69	계유년(1693,숙종19)	최태웅(崔泰雄) 추안	역모무고	
70	갑술년(1694,숙종20)	함이완(咸以完)·김인(金寅) 등 추안	역모무고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71	병자년(1696,속중22)	응선(應先)·김천추(金天樞) 등 추안	저주	
72	병자년(1696,속중22)	체종(體宗) 추안	위조	
73	정축년(1697,속중23)	이영창(李榮昌) 등 추안	역모	
74	정축년(1697,속중23)	홍기주(洪箕疇) 등 추안	역모	
75	정축년(1697,속중23)	곽제송(郭齊嵩) 추안	역모무고	
76	무인년(1698,속중24)	안사현(安士賢) 등 추안	왕릉훼손	
77	경진년(1700,속중26)	김윤창(金胤昌) 추안	홍소	
78	신사년(1701,속중27)	죄인 조영식(曹永植) 추안	역모무고	
79	신사년(1701,속중27)	숙정(淑正)·설향(雪香) 등 추안	저주	
80	갑신년(1704,속중30)	죄인 주명철(朱命哲) 추안	왕릉훼손	
81	병술년(1706,속중32)	죄인 임부(林溥) 등 추안	홍소	
82	병술년(1706,속중32)	죄인 이잠(李潛) 추안	홍소	
83	정해년(1707,속중33)	죄인 박의량(朴義良) 등 추안	역모무고	
84	신묘년(1711,속중37)	무고 죄인 장천련(張千連) 등 추안	역모무고	
85	신묘년(1711,속중37)	죄인 정렴(鄭濂) 등 추안	역모무고	
86	임진년(1712,속중38)	죄인 이천재(李天栽) 추안	역모무고	
87	임진년(1712,속중38)	죄인 이운(李漣) 추안	역모무고	
88	임진년(1712,속중38)	죄인 서종철(徐宗哲) 추안	역모무고	
89	계사년(1713,속중39)	죄인 이동석(李東奭) 등 추안	홍언	
90	갑오년(1714,속중40)	죄인 김상현(金象鉉) 등 추안	홍소	
91	을미년(1715,속중41)	죄인 이세경(李世卿) 등 추안	괘서	
92	신축년(1721,경중1)	죄인 조성복(趙聖復) 추안	홍소	
93	임인년(1722,경중2)	죄인 김승석(金承錫)·최수만(崔壽萬) 추안	홍언	
94	계묘년(1723,경중3)	죄인 이시필(李時弼) 추안	홍언	
95	갑진년(1724,영조즉위)	죄인 이의연(李義淵) 추안	홍소	
96	갑진년(1724,영조즉위)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추안	역모	
97	을사년(1725,영조1)	죄인 방만규(方萬規) 추안	홍소	
98	을사년(1725,영조1)	죄인 목시룡(睦時龍) 등 추안	역모	
99	을사년(1725,영조1)	조덕린(趙德隣) 추안	홍소	
100	병진년(1736,영조12)	최하징(崔夏徵) 등 추안	전패훼손	
101	을사년(1725,영조1)	죄인 최석산(崔錫山) 등 추안	왕릉훼손	
102	무신년(1728,영조4)	무신란(이인좌의 난)	역모	
103	기유년(1729,영조5)	친국(親鞫) 죄인 황소(黃聊) 추안	홍소	
104	기유년(1729,영조5)	기유년 추안급국안	역모	
105	기유년(1729,영조5)	죄인 이석효(李錫孝) 추안	역모무고	
106	경술년(1730,영조6)	죄인 세국(世國) 추안	역모무고	
107	경술년(1730,영조6)	경술년 모반사건	역모	
108	신해년(1731,영조7)	죄인 성탁(成琢) 심문 기록	역모무고	
109	신해년(1731,영조7)	김삼금(金三金) 심문 기록	홍언	
110	계축년(1733,영조9)	이제동(李濟東) 심문 기록	역모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111	계축년(1733,영조9)	이위 궤서 사건	궤서	
112	계축년(1733,영조9)	원팔(元八) 심문 기록	궤서	
113	계축년(1733,영조9)	김계보(金繼寶) 심문 기록	흥언	
114	갑인년(1733,영조9)	심건이(沈建伊) 심문 기록	흥언	
115	갑인년(1734,영조10)	서무필(徐武弼) 심문 기록	궤서	
116	갑인년(1734,영조10)	남극(南極) 심문 기록	역모무고	
117	병진년(1736,영조12)	병진년 심문 기록	흥소	
118	정사년(1737,영조13)	김성탁(金聖鐸)·안세복(安世福) 등의 추안	흥소	
119	무오년(1738,영조14)	양시박(楊始搏) 등의 추안	역모	
120	기미년(1739,영조15)	성유열(成有烈) 추안	흥소	
121	기미년(1739,영조15) -경신년(1740,영조16)	김태성(金兌成) 등의 추안 -양찬규(梁纘揆)가 관련된 국안-	역모	
122	경신년(1740,영조16)	박동준(朴東峻)의 추안	흥소	
123	경신년(1740,영조16)	양재구(梁再九) 추안	역모	
124	경신년(1740,영조16)	김원재(金遠材) 추안	흥언	
125	경신년(1740,영조16)	노택(魯澤) 추안	역모무고	
126	신유년(1741,영조17)	여문표(呂文杓) 추안	궤서	
127	신유년(1741,영조17)	이광의(李匡誼) 추안	흥언	
128	신유년(1741,영조17)	송익휘(宋翼輝) 추안	흥언	
129	신유년(1741,영조17)	이광덕(李匡德) 추안	흥언	
130	임술년(1742,영조18)	민창수(閔昌洙) 추안	흥소	
131	계해년(1743,영조19)	김은창(金殷昌) 추안	역모무고	
132	갑자년(1744,영조20)	윤광천(尹光天) 추안	흥언	
133	을축년(1745,영조21)	이득중(李得中)·조징(趙徵) 추안	흥언	
134	을축년(1745,영조21)	홍우집(洪禹集) 등 추안	흥소	
135	무진년(1748,영조24)	팔금(八金) 추안	궤서	
136	무진년(1748,영조24)	죄인 이지서(李之曙) 추안	궤서	
137	무진년(1748,영조24)	죄인 윤용리(尹用履) 추안	궤서	
138	기사년(1749,영조25)	안변(安邊)의 전패(殿牌) 작변(作變) 죄인들 추안	전패훼손	
139	기사년(1749,영조25)	권송(權崇) 등 추안	궤서	
140	경오년(1690,숙종16)	홍충선(洪忠先) 추안	궤서	
141	신미년(1751,영조27)	죄인 김정구(金鼎九) 추안	흥언	
142	임신년(1752,영조28)	죄인 윤봉오(尹鳳五) 등 추안	흥언	
143	임신년(1752,영조28)	죄인 이세희(李世熙) 등 추안	흥소	
144	계유년(1753,영조29)	죄인 남태적(南泰績) 추안	역모	
145	계유년(1753,영조29)	죄인 조관빈(趙觀彬) 추안	흥소	
146	을해년(1755,영조31)	포도청 심문기록	역모	
147	을해년(1755,영조31)	역적 윤지(尹志) 등 추안	역모	
148	을해년(1755,영조31)	역적 심정연(沈鼎衍) 등 추안	역모	
149	을해년(1755,영조31)	죄인 강유(姜維) 등 추안	흥소	
150	을해년(1755,영조31)	죄인 선우신(鮮于愼) 추안 첨부	위조	
151	을해년(1755,영조31)	역적 이성(李) 등 추안	궤서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152	병자년(1756,영조32)	죄인 이온(李訪) 등 추안	왕릉훼손	
153	병자년(1756,영조32)	죄인 박석명(朴錫命) 추안	가칭어사	
154	병자년(1756,영조32)	역적 이운징(李雲澄) 등 추안	역모	
155	병자년(1756,영조32)	역적 이지완(李枝完) 등 추안	역모	
156	정축년(1757,영조33)	죄인 홍술인(洪述人) 추안	역모무고	
157	무인년(1758,영조34)	죄인 김봉갑(金鳳甲) 추안	역모무고	
158	무인년(1758,영조34)	죄인 김경약(金景躍) 추안	괘서	
159	기묘년(1759,영조35)	죄인 유함(柳涵) 추안	괘서	
160	기묘년(1759,영조35)	죄인 전석조(田錫祚) 등 추안	괘서	
161	기묘년(1759,영조35)	죄인 현창(玄昶) 등 추안	왕실물건 절도	
162	기묘년(1759,영조35)	죄인 김석태(金碩泰) 등 추안	왕실물건 절도	
163	경진년(1760,영조36)	죄인 변치원(卞致遠) 추안	역모무고	
164	경진년(1760,영조36)	죄인 신후일(愼後一) 등 추안	역모	
165	신사년(1761,영조37)	죄인 이정(李昧) 등 추안	홍소	
166	계미년(1763,영조39)	죄인 배운현(裴胤玄) 추안	괘서	
167	계미년(1763,영조39)	죄인 전유득(田有得)·김중광(金重光) 등 추안	왕실물건 절도	
168	계미년(1763,영조39)	죄인 주영흥(朱永興) 등 추안	홍언	
169	계미년(1763,영조39)	역적 심내복(沈來復) 등 추안	역모	
170	갑신년(1764,영조40)	죄인 이어대(李如大) 등 추안	역모무고	
171	갑신년(1764,영조40)	죄인 홍득여(洪得興) 등 추안	역모무고	
172	갑신년(1764,영조40)	역적 이태정(李太丁) 등 추안	역모	
173	병술년(1766,영조42)	죄인 이정섭(李廷瓏) 추안	홍언	
174	무자년(1768,영조44)	죄인 황응직(黃應直) 등 추안	홍언	
175	신묘년(1771,영조47)	죄인 고세양(高世讓) 등 추안	괘서	
176	임진년(1772,영조48)	죄인 한필수(韓必壽) 등 추안	지시불이 행	
177	임진년(1772,영조48)	죄인 유언민(兪彦民) 추안	지시불이 행	
178	임진년(1772,영조48)	죄인 권도(權款) 추안	지시불이 행	
179	을미년(1775,영조51)	죄인 황택인(黃宅仁) 등 추안	홍소	
180	을미년(1775,영조51)	죄인 박규수(朴奎壽) 추안	탐관오리	
181	병신년(1776,정조즉위)	죄인李明휘(李明徽) 추안	홍소	
182	병신년(1776,정조즉위)	역적 이도현(李道顯) 등 추안	홍소	
183	정유년(1777,정조1)	죄인李宗姆(李宗姆) 등 추안	위조	
184	정유년(1777,정조1)	죄인 김방행(金方行) 추안	역모	
185	정유년(1777,정조1)	역적 전흥문(全興文) 등 추안	역모	
186	정유년(1777,정조1)	죄인 이성진(李成鎭) 추안	역모	
187	무술년(1778,정조2)	죄인 홍낙임(洪樂任) 추안	역모	
188	무술년(1778,정조2)	역적 홍양해(洪量海) 등 추안	홍소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189	기해년(1779,정조3)	죄인 정력(鄭饑)·이진후(李鎭厚) 등 추안	역모	
190	임인년(1782,정조6)	역적 이유백(李有白)·이택징(李澤徵) 등 추안	흉소	
191	임인년(1782,정조6)	역적 권홍징(權泓徵) 추안	흉소	
192	임인년(1782,정조6)	역적 김정채(金貞采)·송환구(宋煥九) 추안	흉소	
193	임인년(1782,정조6)	역적 문인방(文仁邦)·이경래(李京來) 등 추안	역모	
194	갑진년(1784,정조8)	죄인 김하재(金夏材) 추안	괘서	
195	을사년(1785,정조9)	역모에 동참한 죄인 유태수(柳泰守) 등 추안	역모	
196	정미년(1787,정조11)	죄인 이광운(李匡運)·한채(韓采) 등 추안	흉소	
197	임자년(1792,정조16)	죄인 윤구종(尹九宗) 추안	흉소	
198	병진년(1796,정조20)	죄인 정호인(鄭好仁) 등 추안	흉소	
199	신유년(1801,순조1)	사악한 천주학 죄인 이가환(李家煥) 등 심문 기록	사학	
200	신유년(1801,순조1)	사학(邪學) 죄인 이기양(李基讓) 등 심문 기록	사학	
201	신유년(1801,순조1)	사학(邪學) 죄인 강이천(姜彝天) 등 심문 기록	사학	
202	신유년(1801,순조1)	사학 죄인 김여(金鋸) 등 심문 기록	사학	
203	신유년(1801,순조1)	심문 기록	사학	
204	신유년(1801,순조1)	역적 임시발(任時發)·윤가기(尹可基) 등 심문 기록	괘서	
205	신유년(1801,순조1)	사학(邪學) 죄인 황사영(黃嗣永) 등 심문 기록	사학	
206	갑자년(1804,순조4)	오재영(吳載榮)·이성세(李性世) 등 심문 기록	역모	
207	갑자년(1804,순조4)	죄인 권유(權裕)·이안묵(李安默) 등 심문 기록	흉소	
208	갑자년(1804,순조4)	죄인 이달우(李達宇)·장의강(張義綱) 등 심문 기록	역모	
209	정묘년(1807,순조7)	전패(殿牌) 사건을 일으킨 죄인 조근환(趙謹煥) 심문 기록	전패훼손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210	정묘년(1807,순조7)	죄인 이광욱(李光郁)·이관호(李觀鎬) 등 심문 기록	역모	
211	무진년(1808,순조8)	오태성(吳泰性) 등 심문 기록	역모무고	
212	기사년(1809,순조9)	죄인 조경(趙劫) 심문 기록	괘서	
213	기사년(1809,순조9)	임금에게 큰 죄를 진 죄인 장몽서(張夢瑞) 심문 기록	괘서	
214	신미년(1811,순조11)	임금에게 큰 죄를 진 죄인 허윤(許倫) 심문 기록	괘서	
215	임신년(1812,순조12)	죄인 이진채(李振采) 등 추안	흉언	
216	계유년(1813,순조13)	죄인 박동직(朴東稷) 추안	괘서	
217	계유년(1813,순조13)	난언범상(亂言犯上) 죄인 백태진(白兌鎭) 등 추안	흉언	
218	정축년(1817,순조17)	죄인 이희조(李希祖) 등 추안	흉소	
219	기묘년(1819,순조19)	죄인 김재묵(金在默) 등 추안	괘서	
220	갑신년(1824,순조24)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이인백(李仁白) 국안	괘서	
221	병술년(1826,순조26)	죄인 김치규(金致奎)·이창곤(李昌坤)· 유성호(柳性浩)·이원기(李元基) 국안	괘서	
222	병술년(1826,순조26)	죄인 박형서(朴亨瑞)·정상채(鄭尙采)· 신계량(申季亮) 국안	괘서	
223	기축년(1829,순조29)	시부(弑父) 죄인 김말손(金末孫) 국안	강상범죄	
224	기축년(1829,순조29)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이노근(李魯近) 국안	괘서	
225	기축년(1829,순조29)	죄인 신의학(愼宜學)·송수겸(宋守謙) 등 국안	괘서	
226	기축년(1829,순조29)	기축년 심문기록	역모	
227	병신년(1836,헌종2)	죄인 강시환(姜時煥) 국안	흉소	
228	병신년(1836,헌종2)	범상부도죄인(犯上不道罪人) 정규흠(鄭奎欽) 옥안(獄案)	흉소	
229	병신년(1836,헌종2)	역적 남공언(南公彦)·남응중(南膺中)·남경 중(南慶中)·문헌주(文憲周) 옥안	역모	
230	정유년(1837,헌종3)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원대익(元大益) 심문 기록	어진훼손	
231	기해년(1839,헌종5)	사학모반(邪學謀叛) 죄인 양놈·유진길(劉進吉) 등 안(案)	사학	
232	경자년(1840,헌종6)	죄인 김정원(金鼎元) 옥안(獄案)	흉소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233	갑진년(1844,헌종10)	역적 민진용(閔晉鏞)·이원덕(李遠德) 등 국안	역모	
234	병오년(1846,헌종12)	죄인 김필(金) 심문 기록	홍소	
235	무신년(1848,헌종14)	죄인 이목연(李穆淵)·이승헌(李承憲) 심문 기록	홍소	
236	계축년(1853,철종4)	김수정(金守禎)·홍영근(洪榮瑾) 심문 기록	역모	
237	기미년(1859,철종10)	상전을 살해한 죄인 복동(福同) 심문 기록	강상범죄	
238	신유년(1861,철종12)	죄인 염종수(廉宗秀) 심문 기록	위조	
239	임술년(1862,철종13)	죄인 김순성(金順性)·이금선(李兢善) 심문 기록	역모	
240	임술년(1862,철종13)	역적 임일희(任駟禧) 심문 기록	역모	
241	병인년(1866,고종3)	병인사옥(丙寅邪獄) 죄인 남종삼(南鍾三)·홍봉주(洪鳳周) 등 국안	사학	
242	병인년(1866,고종3)	삼성추안(三省推案)	강상범죄	
243	무진년(1868,고종5)	사학죄인(邪學罪人) 이재의(李在誼) 등 국안	사학	
244	무진년(1868,고종5)	사학죄인 조연승(曹演承) 등 국안	사학	
245	무진년(1868,고종5)	모반대역(謀反大逆) 죄인 정덕기(鄭德基) 등 국안	역모	
246	기사년(1869,고종6)	역적 민회행(閔晦行) 등 국안	역모	
247	경오년(1870,고종7)	진주(晉州) 죄인 김희국(金熙國) 등 국안	역모	
248	신미년(1871,고종8)	역적(逆賊) 김창실(金昌實)·김여강(金汝江) 등 국안	사학	
249	신미년(1871,고종8)	역적 이필제(李弼濟)·정기현(鄭岐鉉) 등 국안	역모	
250	임신년(1872,고종9)	의금부 역적 김응룡(金應龍)·오윤근(吳潤根) 등 국안	홍언	
251	임신년(1872,고종9)	의금부 역적 심담응(沈聃應) 등 국안	역모	
252	계유년(1873,고종10)	죄인 최익현(崔益鉉) 심문 기록	홍소	
253	계유년(1873,고종10)	죄인 박우현(朴遇賢) 심문 기록	홍소	
254	갑술년(1874,고종11)	죄인 손영로(孫永老) 심문 기록	홍소	
255	병자년(1876,고종13)	죄인 신철균(申哲均) 등 심문 기록	역모	

연번	시기	사건명	사건종류	비고
256	정축년(1877,고종14)	죄인 이병연(李秉淵) 등 심문 기록	역모	
257	신사년(1881,고종18)	죄인 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 등 국안	흉소	
258	신사년(1881,고종18)	죄인 홍재학(洪在鶴) 국안	흉소	
259	신사년(1881,고종18)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안기영(安驥泳) 등 국안	역모	
260	임오년(1882,고종19)	대역부도 죄인 김장손(金長孫) 등 국안	역모	
261	임오년(1882,고종19)	죄인 윤상화(尹相和) 국안	흉소	
262	계미년(1883,고종20)	대역부도 죄인 허욱(許煜) 등 국안	역모	
263	계미년(1883,고종20)	죄인 백낙관(白樂寬) 국안	흉소	
264	갑신년(1884,고종21)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이희정(李禧貞) 등 국안	역모	
265	을유년(1885,고종22)	대역부도 죄인 김춘영(金春永)·이영식(李永植) 국안	역모	
266	을유년(1885,고종22)	모반대역부도(謀叛大逆不道) 죄인 윤경순(尹景純) 등 국안	역모	
267	병술년(1886,고종23)	모반대역부도 죄인 성인묵(成仁默) 등 국안	역모	
268	정해년(1887,고종24)	죄인 신기선(申箕善) 국안	역모	
269	임진년(1892,고종29)	모반부도(謀叛不道)죄인박홍근(朴弘根)등국안	역모	

ABSTRACT

The types and transitions of rebellion cases in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study of the 《Ch’uan kŭp Kugan》

Min, Moon-Ki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Ch’uan kŭp Kugan(推案及鞫案)》 is a record of the 'Ch’ukug(推鞠)' that revealed the whole story of the rebell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 far, the tendency to study political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not been able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the 《Ch’uan kŭp Kugan》. While recognizing its importance, the judicial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Ch’uan kŭp Kugan》 were studied, and only the individual cases and periods described in 《Ch’uan kŭp Kugan》 were studied. In particular, research on individual cases has not been conducted on various cases, and only about 20 of the 269 cases included in the 《Ch’uan kŭp Kugan》 have been dealt with. Therefore, attempts to consider 《Ch’uan kŭp Kugan》 as a whole are not sufficient.

In this study, 《Ch'uan kŭp Kugan》 tried to create an opportunity to have a new perspective o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a comprehensive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reinterpret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history so far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cords recorded in 《Ch'uan kŭp Kugan》 and various incidents dealt with by Ch'ukug and 'Ch'ukug'.

Therefore, a comprehensive study of 《Ch'uan kŭp Kugan》 was attempted. First of all, through legal regulations and applicable aspe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rime corresponds to the "ten evils(十惡)" defined in 《Dae Myeong Ryul(大明律)》, even though the types of cases dealt with by 《Ch'uan kŭp Kugan》 are very diverse. Accordingly, in addition to challenging the rebellion and legitimacy of the previously considered rebellion against the dynasties, the cases dealt with by 《Ch'uan kŭp Kugan》 were found to be very diverse, anonymous letters(掛書), violent appeals(凶疏), royal tomb damage, evil learning(邪學), and moral principle crimes(綱常犯罪). In other words, Joseon, a dynastic country with the ideology of Neo-Confucianism, has dealt with a variety of cases in order to maintain its system and order.

It is at the time of execution that the case dealt with in 《Ch'uan kŭp Kugan》 is a crime of treason or its equivalence that has been taken seriously at the time of execution. At that time, the time of execution was set by law. However, crimes that fall under the category of "ten evils" were exceptions. In this case, it was executed immediately without waiting. This trend can be seen in most cases recorded in 《Ch'uan kŭp Kugan》.

A total of 269 cases were included in 《Ch'uan kŭp Kugan》. The case occurred during the 300 years from King Seonjo's 34th (1601) to King Gojong's 29th (1892). Each king has a different tenure. It is unreasonable to compare the number of incidents simply, so if you calculate the average number of incidents per year, you can find that King Yeongjo, King Injo, King Sukjong, and King Sunjo have more incidents in order. However, the average number of such incidents per year is mostly during periods of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and during large-scale revolts that threaten the

rule or coordination of reformed monarchs. For example, the one's tenure of King Sukjong's reign due to repeated changes in politics, the crisis of repression of Catholic faith, and the one's tenure of King Yeongjo, who dreamed of political reform, are examples. It can be said that many rebellious cases occurred at a time when the fear of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the dynasty and damaging its authority was higher than before.

About 4,200 people appear on the 《Ch'uan kŭp Kugan》, an average of 15.9 people per incident. Howev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case, at least one person, or hundreds of people, will be involved in the trial,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cases. Moreover, there are many different social statuses and responsibilities, and hundreds of them can be confirmed by looking at the records. In other words, the royal family, the ministers of Uijeongbu(議政府), bureaucrats, civil servants, ordinary people, monks, and servants were all questioned in the same place as the field of Ch'ukug.

The above discussion is just an attempt to review and organize the 《Ch'uan kŭp Kugan》 as a whol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various cases recorded on the 《Ch'uan kŭp Kugan》 were treated as rebellion or cases equivalent to rebellion, were accepted as very serious cases of the time, and were dealt with by pursuit.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administrative power at that time was concentrated in the recommendation that only the king could relocate, but in the case of such a recommendation, only the rebel conspiracy as in the conventional wisdom. There was not. Open Ch'ukug for savage crimes such as using ferocious words on a daily basis, spreading hoaxes, destroying royal tombs, stealing royal stuff, having Catholic faith, and killing fathers and masters. It corresponded to the case of proceeding with the hearing.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act of rebellion against mediation, but also the types of cases and the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those involved are the same regardless of rank or rank. This gave us a glimpse into the various rebellious incidents of the then king and the Imperial Court, and gave us a glimpse of the different political situations of each era. Of course, it is not possible to grasp the more detailed situation of each era and 269

cases and know the details, so I would like to leave it as a future research subject.

[Key-words] Rebellion, The case of rebellion, Ch'ukug(推鞠), The Field of Ch'ukug(推鞠廳), 《Ch'uan kŭp Kugan(推案及鞠案)》